

#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장원규



지역법제 연구 15-16-①-5

#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장 원 규

#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Austria

연구자 : 장원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ang, Won-kyu

2015. 9. 30.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부패행위는 주요한 보편적인 문제임. 부패행위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는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임. 또한 부패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쇄시키고 법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음
- 가족의 유대관계, 학연 및 지연에 근거한 불공정하고 부정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청탁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행위의 주된 원인이었음. 하지만,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현재의 법제는 흠결되어 있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반부패행위 관련 법제의 입법을 촉진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 정실인사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수정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사회, 정치, 법

- 세계적인 반부패행위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는 2014년도 부패인식(청렴성)지수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는 174개 국 중 23위를 차지하고, 100점 만점 중 72점을 얻음
- 오스트리아의 로비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 법에 의해 로비활동 등록부가 설치되었고, 공직자와 정치가의 로비스트 활동을 엄격히 규제함
-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오스트리아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몇 가지 유형을 도입하고 논의하기 시작함. 하지만 포괄적인 공익신고자법제로의 전환은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오스트리아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한 법제와 대응기법을 살펴보고 분석함에 있음

## II. 주요 내용

- 유럽연합에서 반부패행위 계획 및 방법
  - 부패행위와 관련한 유럽법제의 발달을 개관함
  - 유럽반부패그룹과 유럽회의의 감시체계를 조망함
-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의의
-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규범체계
  - 연방공무원법;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제와 이와 관련한 조항
  - 단체책임법, 로비법, 정당법, 행동강령 등

□ 부패행위 대응기구

-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 경제범죄 및 부패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 등.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 오스트리아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부분적인 법적 체계를 이루고 있음. 다행해도 최근 공익신고자 권리를 강화하는 움직임 보임
-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의 개념, 공익신고자 정책과 보호에 관한 개관함

### III. 기대효과

□ 현재 오스트리아의 반부패행위 체계와 법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정의상의 문제, 대외 부패행위의 실제와 관련한 관할상의 문제, 자산회복, 부패행위와 좋은 정부와의 조화, 부패행위와 인권과의 조화 등

□ 본 연구는 부패행위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적 시스템의 수용 및 차이에 있어 잠재적인 접점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상황을 알리는 것에 도움을 줌

▶ 주제어 : 오스트리아, 공직자, 부패행위의 예방 및 방지, 로비활동, 공익신고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s

- Corruption is a serious general problem. Due to its economic influences, corruption is a threat to stability and security of societies. It undermines the values of democracy and jeopardizes the rule of law.
  
- Unfair and improper influence-peddling and solicitations based on family ties and regional or academic relationships have been the main causes of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However, there was a loophole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o regulate those malpractices.
  
- With regard to cronyism expanded to include retirees, the Korea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revised the Guidelines on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on June 30, 2014.
  
-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n March 3, 2015 and will take effect September 28, 2016.
  
- The revised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take effect January 16, 2016.

- Austrian Society, Politics, Laws against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 The global anti-corruption organiza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published it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for 2014. Austria is in place this year, 23 of a total of 174 countries assessed. Austria is in this scale this year 72 of a possible 100 points.
  - The Austrian lobbying and interest representation law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13. The law established the lobbying register and the explicit prohibition of acting as a lobbyist for public officials and politicians.
  -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ustria has begun to institute and debate some form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Movement on a comprehensive whistleblower law, however, has been minimal.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legal framework and each existing instrument regarding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n Austria.

## **II. Main Contents**

- European Union Anti-Corruption Initiative and Instruments
  - This part sketches the genesis of the European legal framework regarding corruption and outlines the main anti-corruption instruments.
  - It refers to the 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GRECO) and the monitoring mechanism of the Council of Europe (CoE), *etc.*



- Meaning of Public official and Corruption
- System of Norms against Corruption
  - Federal Civil Servants Act (BDG); disciplinary sanctions for civil servants and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m
  - Statute on responsibility of legal entities (VbVG), Lobby Act, Political Parties Act, Code of Conduct, *etc.*
- Organization against Corruption
  - Federal Bureau of Anti-Corruption(BAK), Office of Prosecution for Economic Crime and Corruption, *etc.*
- Whistleblowing and Protections for Whistleblowers
  - Austria has partial legal frameworks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that are considered to be advanced. Encouragingly, in recent years it has taken steps to strengthen whistleblower rights.
  - This part provides an overview over the concept of whistleblowing, whistleblower policies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gainst corruption in Austria

### **III. Expected Effects**

- Specific examinations to the current anti-corruption framework and the legislative system in Austria can be assessed as following respects:

- Definitional problems, jurisdictional problems regarding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sset recovery, the interface between corruption and good governance and that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etc.*
  
- This Studies help to inform states of the actual impact of corruption and potential point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legal systems, which reduced the legal uncertainty.

➤ Key Words : Österreich, Amtsträger, Korruptionsprävention und -bekämpfung, Lobbying, Whistleblowing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I. 연구의 필요성 .....	15
II. 연구의 목적 : 오스트리아 연구의 목적 .....	16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제 2 장 유럽연합의 반부패행위 법제 동향 .....	21
제 1 절 개 관 .....	21
제 2 절 주요 법제의 연혁 .....	21
제 3 절 유럽연합의 부패행위방지 .....	24
I. 개 요 .....	24
II. 부패행위의 예방 및 감독 .....	24
III. 이익대변과 부패행위의 긴장관계에서 로비활동 .....	29
제 3 장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의의 .....	33
제 1 절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개념 .....	33
I. 공직자 .....	33
II. 부패행위 .....	36
제 2 절 부패행위의 유형 .....	39

제 4 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규범체계 .....	41
제 1 절 개 관 .....	41
제 2 절 연방공무원법 .....	42
I. 개 요 .....	42
II. 개별적인 공무원의 의무 .....	42
III. 공무원에 대한 징계 .....	46
제 3 절 단체책임법 .....	47
제 4 절 로비법 .....	51
제 5 절 정당법 .....	55
제 6 절 미디어투명성법 .....	56
제 7 절 행동강령 .....	58
제 5 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	61
제 1 절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 .....	61
제 2 절 경제범죄 및 부패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 ...	64
제 3 절 회계감사원 .....	65
제 4 절 경 찰 .....	68
제 6 장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 .....	71
제 1 절 개 관 .....	71
제 2 절 직무상 비밀과 정보보호 .....	73
제 3 절 위법한 비밀누설: 무분별한 정보제공 .....	76
제 4 절 언론 측면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비밀의 공개 .....	76

제 7 장 결 론 .....	79
제 1 절 연구의 요약 .....	79
제 2 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	79
I. 시사점 .....	79
II. 개선방안 .....	81
 참 고 문 헌 .....	 83
 <부 록>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	9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 연구의 필요성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는 국·내외 및 공적·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에 속한다. 개념적으로 공법상 공직자의 뇌물수수수는 미비한 법적 시스템 또는 친인척 간의 족벌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패행위는 산업사회에서도 드물지 않다. 공법상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이의 교차점에 있는 단체 또는 기업집단의 부패한 구조와 행위도 통상적이면서 세계적으로 현실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최근 홍콩 정치경제위기자문사(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PERC)의 2013년 보고서에서 경제환경에 대한 부패영향과 관련한 한국의 청렴지수(0점은 청렴, 10점은 부패)는 6.98점이었으나, 2014년 보고서에서는 7.05점(조사 대상 16개 국가 중 9위)으로 더 나쁘게 평가 받고 있다.<sup>1)</sup> 특히, 우리나라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sup>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퇴직공직자가 관련 공공기관이나 협회 또는 일반기업에 재취업해 여러 비리와 부정에 개입한 사례는 방위산업,

---

1) PERC, “Asian Intelligence: An Independent Fortnightly Report on Asian Business and Politics”, No. 895, March 19, 2014, <http://www.asiarisk.com/subscribe/exsum1.pdf> (최근 접속일: 2015. 3. 12).

2) 왜냐하면 부패행위사범에 대해 사법상 집행유예와 행정상 형집행정지, 사면, 복권 등이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4대강 사업, 흡쇼핑업체 납품 등 여러 분야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3일 이른바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 사회적·법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주된 내용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며,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법원은 받은 액수의 2~5배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공직자 등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의 제정과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일련의 법제적 변화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커져있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공직자 부패행위 사례와 법적 대응에 시선을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 II. 연구의 목적 : 오스트리아 연구의 목적

오스트리아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국가 이면서 중립국이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1961년에 설립된 경제협력개발 기구의 창립회원이고, 1995년부터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다. 본 연구에서 오스트리아를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연구의 대상국가로 선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면서, 우리나라보다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Transparency)에서 평가한 부패인식(청렴성)지수가 좋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 OECD, 유럽부패방지국(Office européen de lutte antifraude: OLAF), 유럽반부패그룹(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GRECO) 등에서 이루어진 반부패행위에 관한 논의들은 오스트리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 오스트리아 반부패행위정책은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었다. 왜냐하면 뇌물제공이 상당히 방만하게 추구되었고, 오스트리아가 부패행위의 오아시스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sup>3)</sup>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부패행위의 평가와 만연에 있어 계속해서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유럽반부패그룹의 2008년 평가보고에서 오스트리아는 부패방지에서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sup>4)</sup> OECD 뇌물거래방지협약의 실행지수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청렴성)지수에서는 175개 국가 중 23위, 100점 만점에 72점을 차지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외부적인 시각과 평가 이전부터 오스트리아에서는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회적·정치적·법적 논쟁이 있어 왔다. 이를 통해 현재의 법제적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어,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3) Langenhahn in Passarge/Behringer *et al.*, Handbuch Compliance international (2015), S. 391.

4) Council of Europe, Joint First and Second Evaluation Round, Evaluation Report on Austria, GRECO, 2008, para. 15,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2/GrecoEval1-2\\_\(2007\)2\\_Austria\\_EN.pdf](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2/GrecoEval1-2_(2007)2_Austria_EN.pdf) (최근 접속: 2015. 5. 25).

5)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AUT> (최근 접속: 2015. 5. 25).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에서 실행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규제에 관한 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주로 연방 법제를 다루고자 한다. 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규범이나 지침 등에 의해 정리되고 표준화된 주제 및 내용들과 중복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오스트리아의 법제 동향에 관해 정책적·학술적 내용 등을 적절히 심도 있게 소개하고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가능한 형법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고찰한다.

특히, 제2장에서는 오스트리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럽연합기구 및 유럽연합 차원의 반부패행위에 대응하는 법제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최근 로비스트 활동에 대한 정책적 규제적 내용을 정리해 본다. 제3장에서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개념과 함께 부패행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연방공무원법(Beamten-Dienstrechtsgesetz)<sup>6)</sup> 및 로비법(Lobbygesetz)<sup>7)</sup> 등 부패행위에 대응하고 있는 규범체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 형사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면서, 오스트리아 법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책임법(Verbandsverantwortlichkeitsgesetz)<sup>8)</sup>에 대해서는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 등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정리한다.

---

6) Bundesgesetz über das Dienstrecht der Beamten: BDG vom 27. 6. 1979, BGBl. Nr. 333/1979.

7) 정식 명칭은 Lobbying-und Interessenvertretungs-Transparenz Gesetz: LobbyG (BGBl. I 2012/64)이다.

8) 정식 명칭은 직무범죄에 대한 단체책임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VbVG, BGBl. I Nr. 151/2005)이다.

공익신고행위는 그 동안 문제 시 되었던 경우에만 시사적으로 유행을 타는 주제로 비춰져 오곤 했다. 하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법과 사회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 기업과 국가, 법과 인적 자원관리, 심리학과 사회학 등 여러 각 분야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제6장은 공익신고의 논의 배경 및 제도적 측면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의 중점연구 과제로서 8개 국가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 연구를 위하여 기획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각 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책임자들과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 <공동연구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소속)
1	캐나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	영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경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규환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5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6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 훈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7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배성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장 서론

이를 위해 주로 문헌과 인터넷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금까지 4번의 워크숍과 2번의 전문가회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연구계획의 확립, 진행상황의 점검, 전문가 의견의 수렴과 반영 등에 활용하였다.

## 제 2 장 유럽연합의 반부패행위 법제 동향

### 제 1 절 개 관

유럽연합은 1995년 회원국들이 출연한 유럽연합 공동기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분야의 부패행위들로 포커스를 확대해 나갔고, 현재는 2년마다 회원국들의 부패방지 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단순히 부패행위방지를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패행위에 대한 활발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유로존 위기를 겪으면서 각 회원국의 윤리체계 및 정치체계의 차이가 유럽연합 기관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보다 더 포괄적인 부패행위 방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제 2 절 주요 법제의 연혁

1995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공동체(EC)의 재정적 이익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Financial Interests)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허위 보고서나 부정한 문서를 이용한 유럽연합 공동기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996년에는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 보호를 위한 협약의 프로토콜(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Financial Interests)이 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부패행위에 따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7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공동체의 공직자를 포함하는 부패방지 협약(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이 제정되었다. 또한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CoE)<sup>9)</sup>는 부패방지에 대한 20가지의 가이드원칙(Twenty Guiding Principles for the Fight against Corruption)을 도입하였다. 이 가이드원칙은 면책 제한, 뇌물에 의한 세금 감면 금지, 법인을 방패삼는 법적인 책임 회피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9년 초 유럽회의는 부패 관련 형사법적 협약(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을 도입하였다. 이어서 1999년 5월 1일 유럽회의는 반부패행위 국가그룹(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GRECO)을 설립하였다. 반부패행위 국가그룹은 유럽회의의 반부패행위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바람직한 관행과 사회적 압력을 주고받기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부패행위방지 및 적발에 필요한 모범규준(Best Practices)을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어느 회원국의 국내 법제가 유럽회의의 기준에 미달한 것이 발견되면, 유럽회의는 상호평가를 통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실천적 개선을 회원국에 촉구하게 된다. 유럽회의의 회원국이 아니어도 반부패행위 국가그룹에 가입할 수 있고, 부패행위 관련 형사법 협약(Criminal Law Convention ETS 173) 및 부패행위 관련 민사법 협약(Civil Law Convention ETS 174)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반부패행위 국가그룹에는 49개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고, 이들 중 유일하게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미국이다. 오스트리아는 2006년 12월 반부패행위 국가그룹에 가입하여 반부패행위 국가그룹의 제3차 평가 라운드에 포함된 2주제를 자국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아울러 반부패행위 국가그룹이 2014년 3월 스트라스

---

9) 유럽회의란 유럽이사회와는 다른 기관으로 유럽연합의 공동 발전 및 민주주의 원리, 인권, 법의 지배 등을 추구한다.

부르그 제6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제3차 평가 라운드의 오스트리아에 관한 보고서<sup>10)</sup>의 주요 내용을 국내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반부패행위 국가그룹의 권고사항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반부패행위 형사법협정의 국내 입법에 관한 것으로 10가지의 권고사항이 있다. 다른 하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것으로 11가지의 권고사항이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2011년 12월 반부패행위 국가그룹 제53차 회의에서 제3차 평가 라운드에 따른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현황보고서<sup>11)</sup>를 토대로 평가한 것으로, 유럽회의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반부패 법제에 비추어 미흡한 부분을 지적 받은 것이다. 21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형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그 중 12개가 완전 이행, 7개는 부분 이행하는 데 그쳤다. 다만, 공직자 뇌물죄에 관하여는 2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반부패행위 국가그룹으로부터 인정받았다.

1999년 11월 4일 유럽회의는 부패행위 관련 민사법 협약을 도입하였다. 이는 부패행위로 인해 초래된 손실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3년 7월 22일 유럽이사회는 사적 영역에 대한 부패행위 방지에 관한 이사회 결정<sup>12)</sup>을 도입했고, 이는 비영리·영리를 포함한 사업 활동(예를 들어 NGO의 비영리 활동, 스포츠클럽 등)까지 포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1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부패방지 안전규정이 포함된 공공조달 규칙을 도입하였다.

10) Council of Europe, Compliance Report on Austria: Incriminations (ETS 173 and 191, GPC 2), GRECO RC-III (2013) 26E, 2015,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RC3\(2013\)26\\_Austria\\_EN.pdf](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RC3(2013)26_Austria_EN.pdf) (최근 접속: 2015. 7. 27).

11) Situation Report 2013년 7월 제출.

12)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3/568/JHA on Combating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 제 3 절 유럽연합의 부패행위방지

#### I. 개 요

부패행위는 경제 및 사회 전반적으로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뿌리 깊은 부패행위로 인하여 경제발전의 저해, 민주주의 손상, 사회정의 및 법의 지배의 침해를 경험한 바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이러한 현실의 예외가 될 수 없고, 특히 부패행위는 굿 거버넌스, 공공자금의 올바른 관리, 경쟁 원리와 충돌된다. 유럽연합은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유럽연합 내에 있는 부패행위 문제의 진단과 함께 각 회원국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이슈들에 주목하고 있다.

#### II. 부패행위의 예방 및 감독

##### 1. 부패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분야

사소한 부패행위는 몇몇 회원국들에만 광범위한 문제로 남아있다. 부패행위의 위험 수준은 점검, 평가 및 내부 통제가 중앙 보다 더 약한 경향이 있는 지역 및 지방에서 더 높게 나타나곤 한다. 굿 거버넌스 및 부패행위방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몇몇 회원국들 사이에서 고려해볼만한 차이가 있다. 많은 회원국 내에서 지역 정부나 지방 행정부(주요 자산도 관리하는)의 광범위한 재량권은 이 상응하는 회계책임 및 통제시스템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회원국 내에서 특히 부패행위에 취약해 보이는 몇몇 분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도시 발전 및 건설은 부패행위에 대한 취약성이 유럽연합 전반에 걸쳐 매우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어떤 회원국은 환경 및 도시계획 범죄를 방지하고 부패행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획허가와 관련된 환경계획,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는 부패행위에 취약한 분야로 손꼽힌다. 공공조달과 의약 산업 분야와 관련된 보건의료도 부패에 취약한 분야이다. 비공식적 대금지불, 공공조달 및 의약 산업에서의 부패행위가 중대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는 관세행정에서의 부패행위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청렴성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 위기 이후 금융 분야에서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유럽회의 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리포트에서는 역외회사 및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세금회피와 관련한 중대한 부패행위 사례가 드러나 있다. 국내의 부패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회원국들도 부패행위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국가에 위치한 해외 지사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 뇌물수수법(The Bribery Act 2010)을 통해 국내 및 국외의 외국인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한 적절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몇몇 회원국 내에서는 국영기업에 대한 감독상의 결점이 드러나 있다. 왜냐하면 법제가 불명확하고 국영기업의 정치화로 이익에 기반을 둔 협정이나 공익추구가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패행위 방지 보호수단이나 이익 충돌을 예방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시스템도 불충분하다. 특히 지역 혹은 지방에서 공공조달, 건설, 유지보수, 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범죄 집단, 사업 및 정치인의 결합은 회원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조사 결과 조직적인 범죄 행위는 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유럽경찰(Europol)에 의한 유럽연합의 중대하고 조직된 범죄위협평가(EU Serious and Organised Crime Threat Assessment)에서 부패행위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공공 및 사적 영역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 2. 배경적인 쟁점

그 자체로는 부패행위와 연관되지 않을 수 있어도 부패행위로 연결되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보아야 할 이슈들이 있다. 개방성과 투명성은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고, 부패가 일어났을 때 그 위반행위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몇몇 회원국의 효과적인 부패행위방지 정책은 부분적으로 개방성, 투명성, 문서 공개라는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공공행정의 영역 내부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숨기고 있는 불법적인 사안이나 범죄행위를 밝힐 수 있는 적합한 공익신고자 보호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내재된 부패행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의 일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향, 발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조직 내의 청렴한 문화, 인식의 고취, 공익신고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결정 시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로비활동은 부패행위의 위험을 키우고, 규제기관의 쟁탈전 같은 것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제나 로비스트 사이의 자발적인 규약 등을 통하여 이러한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체계는 공공기관들과 외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명확성과 투명성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III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3.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부패방지의 중요성

공공조달은 유럽연합 전체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유럽연합 GDP의 대략 1/5이 매년 공공기관과 공법상 기관들에 의해 상품, 노동, 서비스 조달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 총액의 약 20%가 유럽연합 조달 규정에서 정하는 수치를 초과하는 공공조달에 해당한다. 위원회의 사정에 따르면, 이 입찰공고의 총액은 2011년 대략 425조 유로에 달한다.

공공조달과 연결된 금융흐름의 범위와 일련의 다른 요소들 때문에 공공조달은 부패 관행이 생기기 쉬운 영역이다. 2008년 공공조달과 부패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관행적인 부패의 결과 계약상 추가된 금액은 20~25%에 달하고, 어떤 경우에는 계약 총액의 50%까지 차지한다. 공공조달에 있어서의 청렴성에 대한 OECD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불충분한 통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방해하고 직접적으로 공공지출과, 납세자의 재산에 영향을 끼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을 상승시킨다.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는데다가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공공조달은 특히 높은 위험 부담을 지닌 영역이다.

공공조달에 관한 EU 법제<sup>13)</sup>의 주 목적은, 유럽연합 기능에 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및 특별히 자유로운 물류 및 거주자의 자유,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그에 파생된 원칙들이 지켜지는 것을 보증하는데 있다. 공공조달법제는 공공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조달 시장이 유럽연합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13) 예를 들어, 공공조달 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 지원 프로그램 지침(Utilities Directive), 방어 및 보안 부문에서의 공공조달에 관한 지침(Directive covering public procurement in defence and security sectors), 구제 수단 지침('Remedies' Directives) 등이 있다.

열려있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통일적이고 투명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부패행위 관행의 방지와 관련해서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유럽연합 반부패행위정책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공조달법제는 부패행위혐의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입찰자 제한과 같은 반부패행위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규정, 조달 절차 상 다양한 각 단계의 투명성 및 공시에 대한 상세 규정, 배상의 최소기준, 특이한 저가입찰에 관한 특별 규정 및 조달계약 변경을 위한 특정 요건이 정해진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몇몇 회원국들에는 공공조달에서의 부패행위를 동반한 거래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는 일반적인 부패행위방지 법제 하에서 공공조달에서의 부패를 다루고 있다.

#### 4. 부패행위에 대한 대응

부패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예방적 조치와 사후적 제재가 있다. 다만, 사후적 제재는 주로 형법상의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예방적 조치는 확실한 윤리규칙, 부패척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조치, 다양한 기관 내의 청렴한 분위기 형성, 청렴성 및 효과적인 내부감독시스템과 관련한 위로부터의 아주 명확한 지침 설정, 투명성, 공익정보에의 손쉬운 접근성, 공공기관의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하지만 회원국들 사이에 부패행위예방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방과 더불어 부패를 탐지하는 외부적 내부적 감독체계도 매우 중요하다. 몇몇 회원국 내에서는 사법당국이나 검찰 또는 부패행위방지 위원회가 부패행위와 관련한 막중한 책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활동이 우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깊게 뿌리내린 부패행위는 중앙 및 지방 단계에서의 예방 및 감독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행정 전반적인 종합적 접근 없이는 방지될 수 없다.

민감한 직위에 있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공직자들의 회계책임 강화에 기여하고, 투명성을 더욱 보장하고, 불법 재산, 이익 충돌, 특정 직무와 행정과제의 양립 불가능성의 탐지를 용이하게 하며, 가능한 부패행위 관행의 탐지 및 조사를 촉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익 충돌은 공직자가 개인적인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행위 하거나, 행위 하려고 하거나, 행위 하려는 모양을 갖춘 경우에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부패행위방지 조치 및 감독시스템에 이익충돌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sup>14)</sup> 이익충돌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제재조치들은 다양하다. 결정 과정, 공적 자금의 할당 및 공공조달(특히 지역 단계)과 관련한 이익충돌은 많은 회원국들 내에서 되풀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사 영역 간의 노동력 이동 가능성도 현대사회의 기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두 영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하지만 전 공직자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전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기업 출신 공직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 시 이전 직원들과 관련한 이익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Ⅲ. 이익대변과 부패행위의 긴장관계에서 로비활동

유럽연합은 근래에 경험한 경제위기를 통해 유럽통합 절차의 배후에 있는 큰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경제적인 후퇴를 수반한 경제위기 속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은 유럽연합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이 일어나곤 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유럽연합에서의 로비활동 현상이다. 대부분의 정치영역에서 유럽연합의 관할 확대는 이익대변의 환경변화를 야기했다. 유럽연합

14) 유엔 부패방지 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GRECO, OECD 에도 포함되어 있다.

기구는 여러 판단영역과 권력의 세분화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정치적인 참여는 임박해 있는 계획에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다. 유럽연합기구 주변에서는 이익단체의 혼합으로 정식 로비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에서는 약 15,000에서 20,000명,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는 약 5,000명의 로비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다.<sup>15)</sup> 오늘날 유럽연합의 4분의 1은 정치적 영향력이 최고로 집중된 과밀지역임을 보여준다.<sup>16)</sup> 로비스트의 협력 없이 실현된 유럽연합 지침 또는 주요 법률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개별 회원국에서는 유럽의 정치적 의사형식에 대한 로비스트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럽연합기구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기관에서는 로비활동을 언론의 자유와 정부에 대한 청원권과 같이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sup>17)</sup> 이는 다양한 이익집단이 그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로비활동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점점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기관과 이익단체 또는 로비스트 사이에 있는 여러 스캔들들은 명확하고 강제할 수 있는 원칙 없이, 더 나은 인적 자원 및 연줄 등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지배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에서는 이미 ‘로비활동에서 투명성과 진실성의 10가지 원칙’,<sup>18)</sup>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

15) Fellmann, Die automatische Korruption (2010), S. 46.

16) Milaqi, EU-Lobbying zwischen Interessenvertretung und Korruption (2014), S. 1.

17) [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obbying\\_in\\_europe](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obbying_in_europe) (최근 접속: 2015. 9. 19).

18) OECD,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http://www.oecd.org/gov/ethics/oecdprinciplesfortransparencyandintegrityinlobbying.htm> (최근 접속: 2015. 9. 19).

through Law)에서는 ‘민주적인 시스템에서 비제도권 활동가의 원칙’,<sup>19)</sup>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공개정부의 표준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들 내용에서 일치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투명성, 진실성, 공평한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0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종합적인 로비 규제시스템의 범위<sup>20)</sup>

투명성	진실성	공평한 접근
1. 정보자유에의 정책에 의한 공공정보에의 접근 2. 로비스트 등록시스템 3. 등록시스템의 관리 및 불순응에 대한 제재 4. 입법적인 연역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의한 예방적 공개	5. 공적 및 사적 영역 사이에 회전문과 결부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또는 사후고용 제한 6. 공적 영역의 피고용자를 위한 행동강령 7. 로비스트를 위한 윤리강령 8. 로비스트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9. 협의와 대중참여체계 10. 전문가/자문그룹 구성 및 정책

19)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Role of Extra-Institutional Actors in the Democratic System (Lobbying) Adopted by the Venice Commission at its 94th Plenary Session, 8-9 March 2013, [http://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AD\(2013\)011-e](http://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AD(2013)011-e) (최근 접속: 2015. 10. 6).

20) Transparency International, Lobbying in Europe: Hidden, Influence, Privileged Access, at 3, [http://www.transparency.org/files/content/feature/2015\\_LobbyingEurope\\_Methodology\\_EN.pdf](http://www.transparency.org/files/content/feature/2015_LobbyingEurope_Methodology_EN.pdf) (최근 접속: 2015. 9. 19).

## 제 3 장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의의

### 제 1 절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개념

#### I. 공직자

공직자(Amtsträger)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등에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일컫는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다.<sup>21)</sup> 공직자의 새로운 개념은 입법자의 노력에 따라 확대된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적인 임무 또는 공기업에서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sup>22)</sup> 특히, 형법이나 책임법상 규제에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에서 활동하던지 명예직으로 활동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시보, 시간제공무원, 견습생들도 공직자 신분을 영유할 수 있다.

모든 불법행위는 공직자의 개념 또는 중재법관과 때론 외국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의 기타 범주와 관련하고 있다.<sup>23)</sup> 이러한 개념은 2009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된 형법 제74조 제1항 4a호에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주 또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21) 공직자 개념은 나치즘(Nationalsozialismus)시대에 등장한 것으로 협의의 공무원 개념을 확대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 <http://de.wikipedia.org/wiki/Amtstr%C3%A4ger> (최근 접속: 2015. 5. 25); Council of Europe, Evaluation Report on Austria: Incriminations (ETS 173 and 191, GPC 2), GRECO, 2011, para. 11 fn. 2 비교,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Eval3\(2011\)3\\_Austria\\_One\\_EN.pdf](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Eval3(2011)3_Austria_One_EN.pdf) (최근 접속: 2015. 5. 25).

22) Aicher-Hadler, Verantwortlichkeit bei Amtsmissbrauch und Korruption (2013), S. 29, [http://gemeindefb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_1MB\).pdf](http://gemeindefb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_1MB).pdf) (최근 접속: 2015. 9. 22).

23) Council of Europe, Evaluation Report on Austria: Incriminations (ETS 173 and 191, GPC 2), GRECO, 2011, para. 11,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Eval3\(2011\)3\\_Austria\\_One\\_EN.pdf](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Eval3(2011)3_Austria_One_EN.pdf) (최근 접속: 2015. 5. 25).

형법 제74조 기타 정의규정

4a. 공직자는 다음의 자들을 말한다.

a. 삭제됨<sup>24)</sup>

b. 연방,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관 또는 그의 총연합,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임무의 이행 시 a문에서 언급한 공직자를 제외하고 기관 또는 피고용자로서 입법업무, 행정 또는 사법을 관장하는 자

c. 기타 b문에서 언급한 기관의 이름으로 법집행 시 공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

d. 회계감사원(Rechnungshof)에 의한 규제, 회계감사원과 동등한 각 주의 시설, 비교가능한 국제적이거나 외국 규제시설의 지배하에 있고, b문에서 언급한 법인의 행정을 위한 급부를 주로 제공하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또는 그 법인에 대한 고용관계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자

1964년 최초의 부패방지법에 의해 국내 선출직 공무원의 금지된 개입과 1998년 형법개정법률(Strafrechtsänderungsgesetz)에서부터 선출직 공무원의 증퇴(aktive Bestechung)는 형법상 처벌대상이었다. 2008년 형법개정법률에 의해 처음으로 외국의 선출직 공무원의 증퇴와 수퇴(passive Bestechung)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었다. 선출직 공무원 매수의 구성요건은 선거와 표결 시 표의 매수·매도를 포함한다. 2009년 부패행위형법개정법률에 의해서는 직무규정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내 선출직 공무원의 증퇴와 수퇴는 모든 영역에서 다른 공직자들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25)</sup>

24) BGBl. I Nr. 19/2001에 따라 삭제되었다. 삭제되기 이전에는 “국내 헌법상 대리 기관의 구성원. 다만, 그는 선거와 표결에서 투표하거나 직무규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의무의 행사 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25) 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Fibel zum Korruptionsstrafrechtsänderungsgesetz 2012, S. 18, [https://www.justiz.gv.at/web2013/file/2c948485398b9b2a013c6764c78f2bfb.de.0/korrstraeg\\_fibel\\_webversion.pdf](https://www.justiz.gv.at/web2013/file/2c948485398b9b2a013c6764c78f2bfb.de.0/korrstraeg_fibel_webversion.pdf) (최근 접속: 2015. 8. 10).



b문에서 열거된 시설의 기관은 연방대통령,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선출 또는 임명된 행정기관과 같은 지방정부의 구성원 특히,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피고용자는 이러한 시설에서 인적이면서 경제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고, 법관 예정자 또는 행정시보와 같이 기관의 구성 안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직급 내에서 기능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26)</sup> 또한 법적으로 중요한 행위 또는 사실상의 집행이 문제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는다. 보조근무자도 유사의 공무수행에 속하는 한 공직자에 충족한다. 따라서 b문에서 의미하는 공직자는 기관의 대리권에 근거해 국내외 또는 국제적인 법인의 어떤 것을 대외적으로 대리하는 자, 또는 피고용자로서 임금을 받고 기관조직에 연결되어 활동하는 자로 있었거나 있는 자를 말한다.<sup>27)</sup> 더욱이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장관과 같이 피고용인으로 간주될 수 없는 특별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인도 포함된다.<sup>28)</sup> 그러므로 기관 또는 직원으로써 공법상 다른 이를 위한 입법, 행정, 사법상 임무를 대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성질을 갖는다.<sup>29)</sup> 공법상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직자로 고려됨이 명확해졌다.

c문에서 의미하는 자로는 법원에 의해 지정된 공증인, 행정청을 위해 자동차의 기술적 검사를 시행하는 위탁을 받은 기사, 오스트리아 은행의 사원 등이 있다.<sup>30)</sup>

d문과 관련하여 그 밖의 시설은 오스트리아 전산센터, 연방회계청(Bundesbuchhaltungsagentur), 연방부동산회사(Bundesimmobiliengesellschaft)를 포함한다. 상업적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기업은 이러한 정의에

26) Council of Europe, *op. cit.*, para. 13; 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Fibel zum Korruptionsstrafrechtsänderungsgesetz 2012, S. 19, [https://www.justiz.gv.at/web2013/file/2c948485398b9b2a013c6764c78f2bfb.de.0/korrstraeg\\_fibel\\_webversion.pdf](https://www.justiz.gv.at/web2013/file/2c948485398b9b2a013c6764c78f2bfb.de.0/korrstraeg_fibel_webversion.pdf) (최근 접속: 2015. 8. 10).

27) 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op. cit.*

28) *Ibid.*

29) *Ibid.*

30) Council of Europe, *op. cit.*, para. 14.

포함되지 않는다.<sup>31)</sup> 기업의 기관으로써 또는 기업의 고용관계에 근거해 활동하는 자는 오스트리아 헌법 제126조b 제2항에 따른 공직자이다. 즉, 이러한 기업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지방자치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최소한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의 50% 정도로 참가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구성원들과 그의 운영은 회계감사원, 이와 유사한 주정부 기관 또는 외국규제기관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 II. 부패행위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패행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이에게 건네는 두툼한 돈보따리를 떠올린다. 그러면서 경제·정치·행정·사법·국방의 각계 인사들이나 이익단체들과의 연결고리를 그리게 된다.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한다. 적어도 문외한 이들도 무엇이 부패행위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직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부패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추구에 의해 공공이 침해를 받아 사회가 몰락하거나 도덕적 타락 및 사회적 오명을 남긴다. 부패행위의 정의는 분명치 않다. 이는 학문적으로든 규범적으로든 지금까지 합의된 바가 없다. 그래서 보편 타당한 부패행위의 정의가 없다는 점은 무척 의외의 사실이다.<sup>32)</sup>

그 대신에 부패행위는 형법에서 뇌물공여죄, 부정처사 관련 뇌물 공여죄, 수뢰죄, 부정처사수뢰죄 등과 같은 특별한 형태로 정의되고

---

31) *Ibid.*, para. 15.

32) 다만, 1990년대 말 이래로 유럽회의, 유럽위원회, 유엔에서는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개인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권력남용이라는 광의의 정의를 근거로 삼고 있다; OECD에서는 국제적인 상거래 시 부패행위에 의해 경쟁이 일그러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Fibel zum Korruptionsstrafrechtsänderungsgesetz 2012*, S. 3, [https://www.justiz.gv.at/web2013/file/2c948485398b9b2a013c6764c78f2bfb.de.0/korrstraeg\\_fibel\\_webversion.pdf](https://www.justiz.gv.at/web2013/file/2c948485398b9b2a013c6764c78f2bfb.de.0/korrstraeg_fibel_webversion.pdf) (최근 접속: 2015. 8. 10).

있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는 좁고 제한된 불법행위에 걸맞게 엄밀하게는 부정(Unrecht)의 다른 형태에서 온 것이다.<sup>33)</sup>

부패행위도 하나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며, 부패행위에 관여한 자는 금전적인 대가 등에 따른 어떤 판단에 의한 영향과 같은 유익한 급부를 교환하게 된다.<sup>34)</sup> 상생과는 달리 이에 따른 효과는 관여한 제3자에게로 이전한다.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부패행위를 매수자, 피매수자, 피매수자의 위임자와 관련한 현상으로 고려한 경우, 부패행위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관계와는 구분할 수 있다. 법학의 대리인 이론에서 출발한 경제학 이론 중 하나인 본인-대리인이론(Principal Agent Theory)에 따르면, 본인과 대리인은 계약상 관계에 있고, 본인은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며, 그에게 이러한 임무의 이행을 위한 방법을 전수하고,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sup>35)</sup> 여기에서 본인은 국가, 대리인은 공무원·반민반관기관·공무수탁자, 제3자는 매수자·기업 등을 가리키며 이들은 삼각관계를 형성한다.<sup>36)</sup> 이는 권력이 있는 지위이며, 제3자에게 어떤 것을 교환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이를 종종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등 남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인 본인이 규제법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거나 등한시 하는 경우, 대규모 사업 등에서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는 부패행위를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맡겨진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7)</sup> 다른 한편, 부패

33) de Neve, “Korruption und Demokratie - Perspektiven der Politikwissenschaft”, in: Achathaler/Hofmann/Pazmandy, Korruptionsbekämpfung als globale Herausforderung (2011), S. 131.

34) [http://de.wikipedia.org/wiki/Korruption#Korruption\\_im\\_juristischen\\_Sinn](http://de.wikipedia.org/wiki/Korruption#Korruption_im_juristischen_Sinn)  
(최근 접속: 2015. 5. 19).

35) *Ibid.*

36) Fellmann, Die, automatische‘ Korruption: Handbuch der Korruptionsprävention (2010), S. 34.

37) <http://www.ti-austria.at/korruption/was-ist-korruption.html> (최근 접속: 2015. 5. 19).

행위를 행정, 사법, 경제, 정치 또는 비영리기구 등에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직무상 신뢰가 두터운 지위의 남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sup>38)</sup> 따라서 항상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기관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권력이 남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문제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인지해야 할 것은 부패행위가 오직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경제, 학문, 사법, 스포츠, 문화, 클럽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sup>39)</sup> 부패행위는 매이도프,<sup>40)</sup> 엔론,<sup>41)</sup> 파르마라트,<sup>42)</sup> 지멘스<sup>43)</sup> 등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거대하게 추진되거나 소규모로 공익기부재단, 스포츠클럽, 학부모단체에 의해 행해지기도 한다. 또한 경찰,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범죄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념일 등에 식사초대나 선물바구니 증정, 무료 골프에 초대 등도 부패행위의 유형에 속할 수 있다. 핵심적으로 부패행위 시 문제가 되는 점은 특정한 임무를 지켜야 하는 자가 임무수행의 범위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로 허용되지 않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sup>44)</sup>

---

38) <http://de.wikipedia.org/wiki/Korruption> (최근 접속: 2015. 5. 19).

39) Fellmann, Die, automatische' Korruption: Handbuch der Korruptionsprävention (2010), S. 31.

40) Madoff는 전 미국 증권중개인, 투자상담사, 나스닥 사외이사를 거쳤으며,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 주동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 법원으로부터 2009년 6월 29일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41) 미국의 에너지기업이었던 Enron은 2001년 말 분식회계에 의해 회사 재무상태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며 파산했다.

42) 세계적인 유제품기업인 이탈리아의 Parmalat는 2003년 말 분식회계 부정사건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했었다.

43) 독일 기업 Siemens는 1997년 그리스 통신업체 장비 수주를 위한 뇌물 제공,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보안시스템 계약체결을 위한 뇌물 제공, 2009년 그리스 검찰에 의해 정경유착 포착, 2012년에는 그리스에 투자를 조건으로 사법처리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였다.

44) Dölling in Dölling *et al.*, Handbuch der Korruptionsprävention (2007), Kap. 1 Rn. 2.

<표 2> 부패행위의 특징<sup>45)</sup>

- 공적 직무의 남용, 경영 또는 정치적 전권에서 기능의 남용
- 다른 이를 위함
- 부추김 또는 자발적임
-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 획득
- 손해 또는 불이익의 발생 또는 그 발생의 예상
- 직무상 또는 정치적인 기능에서 공공을 위함
- 경제적인 기능에서 기업을 위함

**제 2 절 부패행위의 유형**

부패행위의 유형은 상황적인 행위, 충동적인 행위, 소규모 행위, 구조적인 행위, 계획적인 행위, 조직적인 행위, 대규모 행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sup>46)</sup> 이렇게 구별된 부패행위의 유형은 일반적인 정의에서 문헌상 확정되어 있지 않다.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것과는 반대로 계획적인 부패행위는 수단과 조치의 정신상 앞선 행위 및 효과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이는 그 행위의 연속을 포함한다. 그래서 받는 자 또는 주는 자에게는 행위 개시와 함께 내적 분석이 이미 범행 전 일어났고, 기획정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는 자가 이미 가능한 부패행위 준비 상태에 대해 숙고한 경우, 계획적인 부패행위가 문제된다.

부패행위의 기회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적인 부패행위(situativen Korruption) 시 행위자는 충동적인 부패행위와 같이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한다.<sup>47)</sup> 행위는 특정한 목표를 향해 계획

45) *Ibid.*, Rn. 1.

46) Mischkowitz/Bruhn/Desch/Hübner/Beese, *Einschätzungen zur Korruption in Polizei, Justiz und Zoll* (2000), S. 172.

47) *Ibid.*, S. 174.

되지 않았고 되풀이해서 개시되지 않는다.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대부분 둘 또는 그 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하고, 주는 자와 받는 자는 통상 행위 전에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황적인 부패행위의 중요한 특징은 주는 자의 급부(예를 들어, 공무원의 이익)가 단지 반대급부(예를 들어, 직권남용) 시에 행해지며,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부패적인 관계는 정말 우연히 발생한다는 점이다.<sup>48)</sup> 제공된 이익이 비교적 적은 가치인 경우, 이를 사소한 부패행위(Bagatellkorruption)라고도 한다.<sup>49)</sup>

구조적인 부패행위(strukturelle Korruption)는 장기간에 걸쳐 부패적인 관계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sup>50)</sup> 이러한 행위는 계획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부패행위가 이루지는 과정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는 잘 알고 지내며 오랫동안 협력한다. 상당히 진척된 관계에서는 장소적·인적으로 제한된 장기간의 부패행위 관계가 문제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관계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측면에서 다수가 부패행위의 사슬에 여러 해를 걸쳐 교착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종종 조직화된 경제범죄에 속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인 부패행위에서는 정치, 사법, 행정에 대한 조직화된 비경제범죄의 시스템적 영향이 문제된다. 전체적으로 상황적인 부패행위와 구조적인 부패행위 사이에 차이는 부패행위가 좀 더 과감해 질수록 계획되고 조직화된 형태에서 보다 강하게 행해진다는 점을 가리킨다.<sup>51)</sup> 부패행위가 정치시스템을 전복시키는 정도로 확산된 경우는 시스템적 부패행위(systemischer Korruption)에 속한다. 시스템적 부패행위는 항상 구체적인 경우를 넘어서 작용하고 장래에 밝혀질 비밀동맹을 전제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sup>52)</sup>

---

48) *Ibid.*, S. 176.

49) Dölling, *op. cit.*, Rn. 15.

50) *Ibid.*, Rn. 16.

51) *Ibid.*

52) Mischkowitz/Bruhn/Desch/Hübner/Beese, *op. cit.*, S. 178.

## 제 4 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규범체계

### 제 1 절 개 관

2012년 7월에는 부패행위방지와 관련해 보다 개선되고 투명해진 규제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투명성 기획(Transparenzpaket)이 결정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 부패방지법은 단일 법률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형법전의 일부분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보면, 주로 형법개정<sup>53)</sup>에 의해 부패방지법체가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부패행위의 방지와 예방은 형법 이 외에도 개별적인 실체법상의 규정들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른바 로비법, 정당법(Parteiengesetz), 미디어투명성법(Medien-Transparenzgesetz)<sup>54)</sup>이 그것이다. 실체법상 규범적인 대응과 더불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행동규범이라는 윤리 규정의 보충과 이행도 부패행위방지를 위해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 도덕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도덕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명백하고 엄격한 부패행위방지 관련 법체가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이다.

53)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1999년 회원국들이 유럽회의의 부패행위방지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부패국가그룹(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을 설치하고 있다. 이 그룹에서는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반부패법체에 비추어 오스트리아의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한 것이 형법분야였다. 이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2년 대대적으로 형법을 개정하였고, 반부패형사법협정과 부속의정서에 비준동의하면서 2014년 1월과 4월에 각각 발효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Council of Europe, Compliance Report on Austria: Incriminations (ETS 173 and 191, GPC 2), GRECO RC-III (2013) 26E, 2015,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RC3\(2013\)26\\_Austria\\_EN.pdf](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RC3(2013)26_Austria_EN.pdf) (최근 접속: 2015. 7. 27) 참조.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형법의 부패행위방지 관련 규정 중 특징적인 점은 적용범위에서 선출직 공무원을 예외 없이 수용하고, 공기업의 기관 또는 직원들도 포함되는 등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Weratschnig, “Korruption in öffentlichen Bereich: Ein Überblick über die geltende Rechtslage in Österreich”, ZRFC 2013, 224 *et seqq.* 참조.

54) 정식 명칭은 미디어협력 및 정기적인 방송매체의 미디어소유자에 대한 광고위탁과 후원의 투명성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ie Transparenz von Medienkooperationen sowie von Werbeaufträgen und Förderungen an Medieninhaber eines periodischen Mediums, BGBl. I Nr. 125/2011)이다. 그리고 2015년에 개정되었다(BGBl. I Nr. 6/2015).

이하에서는 우선 공직자에게 중요한 연방공무원법과 함께 공무원 징계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특징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책임법을 살펴본다. 이어서 로비법, 정당법, 미디어투명성법을 개관하고 행동강령에 대해서도 정리해 본다.

## 제 2 절 연방공무원법

### I. 개 요

연방공무원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개정<sup>55)</sup>이 이루어졌다. 이 법은 연방차원에서 공법상 직무관계에 있는 모든 공무원의 직무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법관시보 또는 법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에게는 법관 및 검찰직무법<sup>56)</sup>이 적용된다. 검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관 및 검찰직무법이 적용되나, 부분적으로 연방공무원법도 적용된다.

연방공무원법 제56조 제 1항에서 부수적인 업무(Nebenbeschäftigung)의 개념정의와 함께 한편으로 부수적인 업무의 금지(연방공무원법 제56조 제2항), 다른 한편으로 어떤 행위는 신고의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연방공무원법 제56조 제3항, 제5항). 허가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이지 않다.

### II. 개별적인 공무원의 의무

#### 1. 부수적인 업무

공무원이 그의 자유시간에 부수적인 업무를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부수적인 업무는 직무관청

55) 17. 6. 2015, BGBl. Nr. 65/2015.

56) Bundesgesetz über das Dienstverhältnis der Richterinnen und Richter, Staatsanwältinnen und Staatsanwälte und Richteramtswärterinnen und Richteramtswärter: RStDG vom 29. 12. 1961, BGBl. Nr. 305/1961.



밖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업상 또는 비직업상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업무는 법적 근거 없이, 무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업무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행위(Nebentätigkeit)는 부수적인 업무와 구별하여 행정청의 위탁 또는 행정청을 위하여 이루어진 활동을 의미한다(연방공무원법 제37조). 부수적인 행위 시에는 예를 들어 강연활동이나 검사활동과 같이(연방공무원법 제37조 제1항) 직무상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다른 영역에서 공무원에게 이전된 연방을 위한 활동이 문제된다. 또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의 소유에 있는 사법상 법인기관의 기능이 부수적인 행위에 속한다(연방공무원법 제37조 제2항). 부수적인 행위에 실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지 않다. 오직 단시간 업무자와 대기 발령된 공무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연방공무원법 제56조 제4항).

따라서 부수적인 업무는 공무원이 그의 직무관계와 일어날 수 있는 부수적인 행위를 벗어나 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sup>57)</sup> 공무원의 직무관계 범위에는 직무상 임무의 이행이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직장 내에서의 행위를 포함한 행위이다. 부수적인 업무의 금지는 이러한 임무이행의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외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금지된 부수적인 업무의 부류는 연방공무원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부수적인 업무의 금지는 통상적으로 그의 내용과 범위에서 이루어지나, 항상 공무원이 행해야 하는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허용된 부수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가 전근, 직무분할, 사용변경 등으로 변경되거나 부수적인 행위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금지될 수 있다.<sup>58)</sup>

57) Kucsko-Stadlmayer, Das Disziplinarrecht der Beamten (2010), S. 342, 343.

58) *Ibid.*, S. 345.

## 2. 선물수취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sup>59)</sup> 연방공무원법 제59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그의 직위에서 선물, 기타 재산적 이익, 그밖에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확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공무원법 제59조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직무수행을 규정한 모든 복무의무와 관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구된 목표설정은 연방공무원법 제56조가 부수행위(Nebenbeschäftigung)의 규제 시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부수행위 시 직무 외 활동을 통해 재정적 취득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선물수취의 규제 시에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바로 공무원에게로 향한 모든 재정적인 것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의 차이점이 있다.<sup>60)</sup>

선물수취금지의 대상인 선물과 재산적 이익은 우선 금전적인 것이 있으나,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이익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휴가여행, 자동차 및 스키 같은 물건 이용의 제공, 대출이자의 포기, 우대적인 구매조건과 같은 서비스제공, 사적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사례 등이 속한다.<sup>61)</sup> 그밖에 이익은 금전적 가치 있는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다른 한편 보편적으로 적은 가치의 선물은 위의 선물로 고려되지 않는다. 연방공무원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널리 행해지고 있는 소액(형법상 소액의 한계는 100 유로)<sup>62)</sup>의 작은 선물을 수취하는 것은

---

59) Aicher-Hadler, Verantwortlichkeit bei Amtsmissbrauch und Korruption (2013), S. 36, [http://gemeindeb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1MB\).pdf](http://gemeindeb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1MB).pdf) (최근 접속: 2015. 9. 22).

60) Kucsko-Stadlmayer, *op. cit.*, S. 374.

61) *Ibid.*, S. 375.

62) Aicher-Hadler, *op. cit.*, S. 36, 39.

법률상 허용된다. 오스트리아 입법자들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을 예방하기 위해 수취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작은 선물은 선물수취 금지에서 제외하고자 했다.<sup>63)</sup> 예를 들어, 기관명이 새겨진 광고성 달력, 불펜, 메모장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으로 만든 불펜은 그러하지 않다. 크리스마스시즌과 같은 특정한 날에 도서, 극장표, 여러 병의 와인을 증정하는 것은 더 이상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판례는 팁(Geldgeschenk 또는 Trinkgeld)을 통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sup>64)</sup> 이에 따라 식사, 사회적인 행사, 그밖에 만남에 초대 시 사회적인 교류 또는 예의 형식에 적절한 것인지 구별되어야 한다.

연방공무원법 제59조 제3항의 측면에서 명예기념품(Ehrengeschenk)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명예기념품은 기념패, 기념반지, 기념검 등의 물건으로 여러 영역에서의 공로에 대해 수여하게 된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은 이를 직무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수취에 대해 직무행정청은 한 달 안에 거절할 수 있다. 공무원이 이에 반하여 받은 경우 징계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어떤 요건 아래에서 명예기념품의 수취를 거절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sup>65)</sup> 따라서 위 규정은 기타 선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방공무원법은 제공된 선물을 수수한 것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을 규정하고 있다. 선물수취는 선물 또는 이익을 실제로 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편 등으로 보내진 선물을 받은 경우, 해당 선물을 지체 없이 반송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수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선물의 요구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인정된다. 또한 어떤 요청은 사실상 요구

63) Kucsko-Stadlmayer, *op. cit.*, S. 375.

64) VwGH, Erkenntnis vom 17. 12. 1992, 91/09/0236; Kucsko-Stadlmayer, *op. cit.*, S. 376 Fn. 2198 재인용.

65) Kucsko-Stadlmayer, *op. cit.*, S. 376.

로서 성질결정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선물을 미리 사실상 받은 바 없이 적절한 제공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선물을 확약한 것이다. 주도권이 누구에게서 기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선물의 수취, 요구, 확약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를 위한 것이든, 어느 당사자 또는 가족구성원 등 제3자를 위해 행해진 것이든 중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로 수취를 위한 민사법상 수권이 존재하는 지도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연방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이 모피코트 같은 선물을 제3자인 배우자를 위해 받는 것으로 확약함으로써 연방공무원법상 선물수수의 금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sup>66)</sup>

### Ⅲ. 공무원에 대한 징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오스트리아에서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직업공무원제 이전 단계에서 면직에 대한 구성요건의 엄밀한 작성의 흠결로 인해 고용주에게 재량행위를 개방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반면에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적절한 권리보호조치와 함께 법치국가적 절차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

오스트리아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특징은 징계를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형벌로 분류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sup>67)</sup>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연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절차에 대해 행정형법<sup>68)</sup>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절차법<sup>69)</sup>이 부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연방공무원법 제105조). 다른 한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상의 계약불이행 형벌시스템(예를 들어, 위약금 등)이 아닌,

---

66) *Ibid.*, S. 377.

67) Weichselbaum, Disziplinarrecht der Beamten und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ZÖR 62 (2007), 537 (539).

68) Verwaltungsstrafgesetz: VStG vom 1. 1. 1991, BGBl. Nr. 50/1991.

69)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AVG vom 1. 1. 1991, BGBl. Nr. 51/1991.

재판상 형벌권과 유사한 것으로도 간주된다.<sup>70)</sup>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 계약관계에서 급부장애의 결과가 문제되기 보다는 일반적인 형법의 한 측면이 문제된다.

연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선물수취는 공무원의 직무상 지위에서 행한 경우에 금지되고 있다. 선물수취의 금지는 공무원이 그의 특별한 직무 행위를 함에 있어 의무에 반하든 의무에 따른 것이든, 그 실행에 대해 어떤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sup>71)</sup> 또한 이러한 직무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행위와 관련해서도 직무상의 지위에서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선물과 직무상의 지위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선물이 공무원의 직무행위 실행 후 거의 감사의 뜻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떤 기대가 공무원의 장래 직무수행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 어느 정도로 공무원이 개인의 명성 또는 우정에 의해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물음과 관련해서 공무원 개인의 영역이 간접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연방공무원법 제59조 제1항 선물금지 조항은 일반적인 소액의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 3 절 단체책임법

2006년 1월 1일부터 직무범죄에 대한 단체책임에 관한 연방법(이른바 단체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에서 최초로 법인과 인적 회사와 같은 기타 단체는 형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된 부패행위 관련 불법행위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3조 참조). 여기에서 법인과 기타 단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 행위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sup>72)</sup> 왜냐하면, 이 법에서는 주의의무 준수자

70) Weichselbaum, *op. cit.*, 540.

71) Kucsko-Stadlmayer, *op. cit.*, S. 377.

72) Council of Europe, Evaluation Report on Austria: Incriminations (ETS 173 and 191,

제 4 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규범체계

중심에 있으며, 기관의 과책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체벌금 (Verbandsgeldbuße)이 부과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참조). 어떤 행위에 대한 단체의 책임과 동일한 행위로 인한 결정권자 또는 임직원의 형벌가능성은 서로 배제되지 않는다. 즉, 법인인 단체와 행위자인 범죄인에게 동등한 정도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표 3> 단체책임법의 체계

제 1 장 적용범위와 정의규정
제 1 조 단체 제 2 조 판단주체와 협력자
제 2 장 단체책임 - 실체법상 규정
제 3 조 책임 제 4 조 단체벌금 제 5 조 단체벌금의 산정 제 6 조 단체벌금 조건부 유예 제 7 조 단체벌금 일부의 조건부 유예 제 8 조 훈령 제 9 조 단체벌금 조건부 유예의 철회 제 10 조 권리승계 제 11 조 상환청구의 배제 제 12 조 일반적인 형법의 적용
제 3 장 단체에 대한 절차
제 13 조 절차의 개시 제 14 조 형사절차에 대한 규정의 적용 제 15 조 관할

GPC 2), GRECO, 2011, para. 8,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Eval3\(2011\)3\\_Austria\\_One\\_EN.pdf](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Eval3(2011)3_Austria_One_EN.pdf) (최근 접속: 2015. 5. 25).

제16조	송달과 필수적인 방어
제17조	피의자로서 심문
제18조	소추고려
제19조	소추의 해제
제20조	가처분
제21조	단체벌금 부과에 대한 신청
제22조	주된 절차와 판결
제23조	공판과 권석판결
제24조	상소
제25조	조건부 유예의 철회 시 절차
제26조	관할 행정청과 감독청의 협조
제27조	단체벌금의 집행
<b>제 4 장 보 칙</b>	
제28조	시행일
제29조	지시
제30조	실행

이 법 제정의 계기는 유럽 및 국제적인 법발전에 있었다.<sup>73)</sup> 즉, 유럽 공동체의 재정이익보호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 영역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하면서 과감한 조치를 통해 법인의 법적 책임을 확보해야 했다. 반면에 기업의 조정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업 측면에서 무과실책임에 대한 거부반응과 우려가 야기되기도 했다.<sup>74)</sup>

여기에서 단체책임은 단체 내 결정권자와 임직원이 단체와 관련한 의무위반 시 그의 직무행위에 대한 단체의 책임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73) Fuchs/Kreissl/Pilgram/Stangl, Generalpräventive Wirksamkeit, Praxis und Anwendungsprobleme des Verbandsverantwortlichkeitsgesetzes (VbVG): Eine Evaluierungsstudie (2011), S. 6, [http://www.irks.at/assets/irks/Publikationen/Forschungsbericht/irks\\_vbvg\\_bericht.pdf](http://www.irks.at/assets/irks/Publikationen/Forschungsbericht/irks_vbvg_bericht.pdf) (최근 접속: 2015. 9. 22).

74) *Ibid.*, S. 9.

단체책임법에서 단체는 법인,登記된 인적회사, 유럽의 경제이익단체를 의미한다. 이에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재단, 협회, 협동조합, 영리조합 등이 속한다.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회, 종교회사, 신앙공동체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단체가 아니며(같은 법 제3조 참조), 단체책임이 없다.

기업과 같은 단체를 개별적인 사건당사자와 같이 다루고자 하는 관점은 윤리적이고 문화적으로 설정된 기업의 책임능력에 맞춘 이론적 규범적 고려의 결과이다.<sup>75)</sup> 아래 그림과 같은 피라미드식 규제모델에서는 형벌에 의한 어떤 위협은 의미 있는 효과를 갖지 못하지만, 형사상 제재까지 사전 반응의 단계적 확산 가능성은 규범에 맞게 펼쳐는 다른 계기와의 상호작용에서 철저히 효과를 발휘하고 기관문화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sup>7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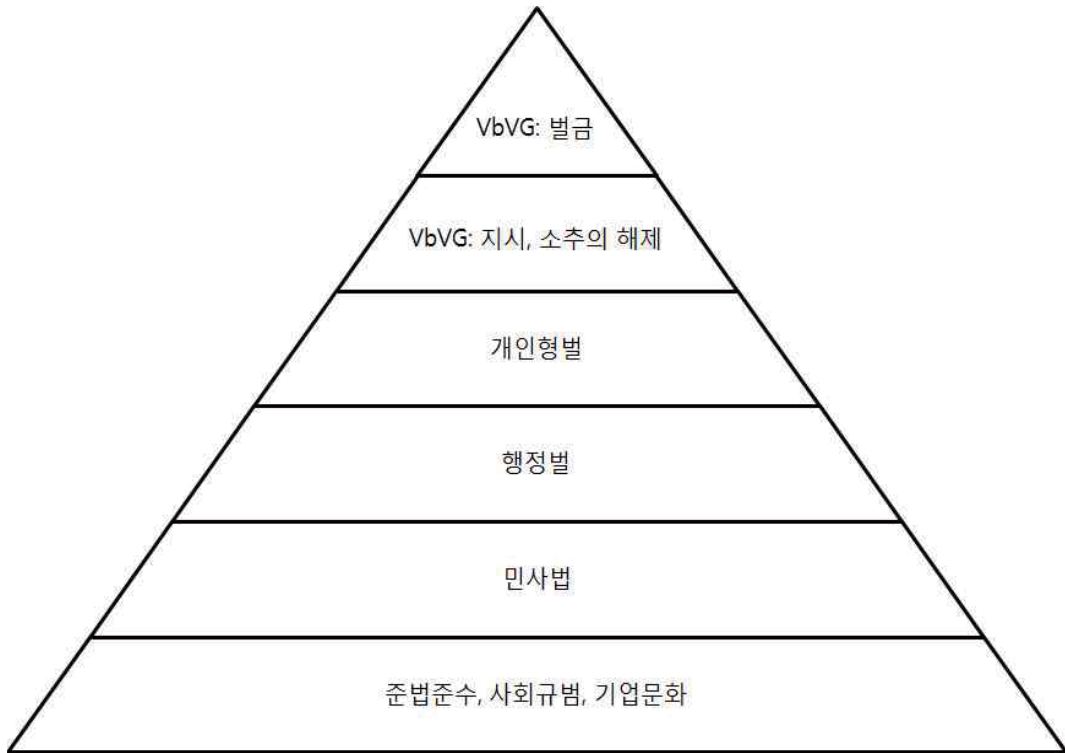
단체책임법의 근본사고는 합리적 선택의 위협모델로써 기업범죄의 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징후와 함께 의심의 여지없이 적용된다. 그래서 피라미드식 규제의 정점에는 단체책임법을 생각하게 된다. 기업형법에 따른 위협적인 유죄선고는 완전히 효과가 없는 하지만, 항상 보조적이고 필수적으로 고선택적 행태통제의 방법으로 보여 진다. 그의 본질적인 잠재력은 자율규제절차를 유발시키는 것에 있다.

---

75) *Ibid.*, S. 12.

76) *Ibid.*, S. 12~13.



<그림 1> 단체책임법의 피라미드식 규제모델<sup>77)</sup>

## 제 4 절 로비법

로비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형법상 또는 의회 조사위원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미디어를 다룬 로비스트 사례는 이러한 영역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 관심세력과 관련자들은 공공기관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표명하며, 이를 위해 광고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시도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원·기업·이익 단체를 개입시키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형성절차의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로비법은 국정판단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관한 명확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등록시스

77) *Ibid.*, S. 13.

제 4 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규범체계

템의 설치, 특정한 행태규율과 활동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표준, 공공 기관의 일선실무자에 대한 불일치규정, 제재의 법정화, 이러한 규정의 침해에 따른 법적 효과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sup>78)</sup>

<표 4> 로비법의 체계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적용범위
제 2 조	예외
제 3 조	권한
제 4 조	정의규정
제 2 장 행동의무	
제 5 조	로비활동
제 6 조	로비활동과 이익대변의 원칙
제 7 조	행동규약
제 8 조	행위제한
제 3 장 등록의무	
제 9 조	로비 및 이익대변의 등록부
제 10 조	A그룹
제 11 조	B그룹
제 12 조	C와 D그룹
제 4 장 제재와 기타 효과	
제 13 조	행정벌
제 14 조	로비와 이익대변의 등록부로부터 삭제
제 15 조	계약의 무효
제 5 장 보 칙	
제 16 조	시행일과 경과규정
제 17 조	실행
제 18 조	지시

78) Langenhahn in Passarge/Behringer, Handbuch Compliance international (2015), S. 395.

로비법상 로비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절차에 영향을 미칠 목적(예를 들어, 입법, 집행, 사경제관리, 진흥정책 등)으로 직무담당자와의 모든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접촉을 말한다(로비법 제1조 제1항, 제4조 1호). 로비스트는 로비행위를 기관, 직원, 로비기업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로비법 제4조 3호). 공무원, 계약공무원, 지역자치단체의 집행 또는 사경제관리의 기타 기관 등(로비법 제4조 10호) 역할담당자는 그의 직무담당 기간 동안 로비스트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로비법 제8조).

다음은 로비스트에 대한 강행적인 요건이다. 첫째, 로비스트는 로비 및 이익대변 등록부(로비법 제5조)에 등록해야 한다. 둘째, 등록되지 않은 로비스트와의 계약은 민사상 무효이다(로비법 제15조 제1항). 셋째, 이는 2만 유로 이하의 벌금, 반복적인 범행은 6만 유로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는 행정위반을 의미한다(로비법 제13조 제1항 1호).

로비법은 로비행위 및 활동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로비법 제6조).

- ▶ 위탁자의 신원과 청탁 내용 공개
- ▶ 부정한 정보생성의 금지
- ▶ 모든 정보전달은 있는 그대로
- ▶ 행위제한과 모순규정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 직무담당자에 대해 부정하고 부적절한 압력 행사의 금지(유혹 또는 위협은 안 되고, 논증은 가능)
- ▶ 역점사항에 개입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
- ▶ 합의의 그밖에 무효 시 성공사례비 합의의 금지(로비법 제15조 제2항)
- ▶ 로비기업에 전달된 성공사례비 국고로 귀속. 해당 액수는 합의된 명목사례비를 초과함(로비법 제15조 제3항)

로비기업과 기업로비스트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이들의 로비 활동에서 행동규약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인터넷에 이를 언급해야 한다(로비법 제7조). 무엇보다도 로비법 적용범위 측면에서 정당, 지방자치단체연맹, 도시연맹, 기타 이익대변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로비법 제1조 제3항). 이러한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절차에 영향을 미칠 목적(예를 들어, 입법, 집행, 사경제관리, 진흥정책 등)으로 직무담당자와의 모든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접촉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로비행위를 할 수 있다.<sup>79)</sup>

다른 한편 형법 제308조에서는 금지된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 정치적 영향력의 매도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 현재도 어떤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분에 넘치는 영향력과 같은 어떤 개입에 대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확약하는 자는 유죄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객관성 없는 로비행위는 차단되어야 한다. 다만, 로비행위자가 공직자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sup>80)</sup>

다음의 경우는 도가 지나친 영향력 행사로 판단되고 있다. 즉, 직무행위에 대해 의무에 반하는 착수 또는 부작위를 의도하거나, 공직자에게 분에 넘치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약하거나 보증한 경우가 그러하다.<sup>81)</sup> 예를 들어, 정당에 대한 자금조달의 제공을 통해 완전히 의무에 따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된 로비행위는 위임자 또는 의뢰인의 이익을 적법하게 대변하는 것과 같이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 로비스트의 보수가 3천 유 이상인

---

79) Aicher-Hadler, *Verantwortlichkeit bei Amtsmissbrauch und Korruption* (2013), S. 43, [http://gemeindeg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1MB\).pdf](http://gemeindeg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1MB).pdf) (최근 접속: 2015. 9. 22).

80) *Ibid.*, S. 41.

81) *Ibid.*, S. 41~42.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만 유로 이상인 경우 최소한 6개월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제 5 절 정당법

수많은 부패행위의 의심사례를 바탕으로 2012년 7월 정당법과 정당진흥법(Parteienförderungsgesetz)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자금규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기부 및 그의 수입 수령의 허용과 공개의무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법적 상황과 비교하여 과감한 단절 또는 변화를 의미한다.<sup>82)</sup>

<표 5> 정당법의 체계

<b>제 1 장 정당과 답변의무</b>
제 1 조 설립, 정관, 투명성 제 2 조 정의규정
<b>제 2 장 후원방법의 한도와 분배</b>
제 3 조 정당후원 제 4 조 선거선전비용의 제한
<b>제 3 장 답변의무</b>
제 5 조 답변보고서 제 6 조 기부 제 7 조 협찬과 광고
<b>제 4 장 답변의무의 규제</b>
제 8 조 감사와 규제 제 9 조 회계사에 대한 모순 제 10 조 회계감사원에 의한 감사와 제재

82) Langenhahn, *op. cit.*

제11조 독립적인 정당투명성부 제12조 제재
제 5 장 기타 법인에 대한 적용
제13조 선거를 선전하는 정당
제 6 장 보 칙
제14조 순수 요강 제15조 기타 연방법의 실행과 적용 제16조 시행일과 경과규정

정당법은 모든 정당이 수입과 지출의 비목에 대해 매년 기부, 후원, 광고리스트, 참여기업리스트를 포함해 회계감사원에 전달되어야 하는 답변보고서와 함께 공개적인 해명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정당법 제5조). 또한 후원에 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후원 하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외관, 자신의 활동과 지급을 지원할 목적으로 모든 금전지급, 현물지급, 정당·선출직 공직자·선거광고자에 대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생생한 지원금 등이 있다(정당법 제2조 6호). 답변보고서에서 모든 정당은 매년 총액이 1만2천 유로를 초과한 후원의 수익을 후원자의 성함과 주소를 명시하여 증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정당은 광고에 의해 개별적으로 3천5백 유로를 초과한 수익을 광고주의 성함과 주소를 명시하여 증명해야 한다(정당법 제7조 제1항, 제2항).

### 제 6 절 미디어투명성법

미디어투명성법은 오스트리아의 정당 중 SPÖ와 ÖVP의 정치스캔들을 거치면서 탄생했다. 어느 미디어의 향응제공 등에 의해 오스트리아의 저널리즘은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 &lt;표 6&gt; 미디어투명성법의 체계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위탁 시 공고의무
제 3 조	공개 시 절차와 상세
제 3 조a	내용상의 요건
제 4 조	후원과 프로그램보수의 공고의무와 공개
제 4 조a	공고의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제 5 조	행정벌
제 6 조	지 시
제 7 조	시행일과 경과규정
제 8 조	실 행

미디어투명성법은 국민의 세금이 지배정당의 선거유세에 쓰이지 않도록 조력해야 한다. 이에 광고매체와 공공기관 진흥의 위탁 시 포괄적인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sup>83)</sup> 즉, 광고와 공공기관의 미디어협력 시 더 나은 투명성을 위해 정부부처, 주 정부, 광역자치단체, 지역자치단체, 법정이익단체, 사회보험기관, 기업, 재단, 기금 등 회계감사원의 통제를 받는 기관 등은 광고와 기타 광고위탁 및 후원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는 4분기별 오스트리아 통신청(Kommunikationsbehörde Austria: KommAustria)에 해야 하고, 각 대중전달 정보매체에 지급된 금액의 총합을 포함해야 한다.<sup>84)</sup> 이때 행정상 고시, 공고, 구직광고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여기에서 2분기별 주의기간 이내에 산정된 위탁, 후원, 각 정기적인 대중전달 정보수단의 총합은 정기적으로 공고되어야 한다. 그밖에 미디어법(Mediengesetz)에서 유사한 개정을 통해 신문의 참여관계에서 더 많은 장점을 살리게 되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재단의 직·

83) *Ibid.*, S. 396.

84) <http://www.rechnungshof.gv.at/sonderaufgaben/medientransparenzgesetz.html> (최근 접속: 2015. 8. 20).

간접적인 참여 시 창설자와 각 재단의 수익자의 신탁관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미디어법 제25조).

정보는 오스트리아 통신청에 의해 공개되어야 하며, 지체된 부분은 필요한 경우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위반 또는 잘못된 신고 시에는 최대 2만 유로까지, 반복적인 경우에는 최대 6만 유로까지의 행정 벌이 부과된다(미디어투명성법 제5조).

## 제 7 절 행동강령

행동강령(Verhaltensregeln)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행동양식의 집합 또는 통일로 이해될 수 있다.<sup>85)</sup> 이는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비준수 시 직접적으로 형벌을 과하는 전통적인 규범은 아니다. 하지만 행동강령의 비준수는 쉽게 형사처벌 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행동강령은 특정한 국가, 지역, 종교, 단체 등에서 특정한 상황에 따른 행동양식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차원에서 행동강령 안에 포섭될 수 있는 행정윤리 또는 공무원 윤리도 강조되고 있다. 공무원 윤리는 충직하고 전통을 의식하며 준법을 준수하는 관리를 겨냥하고 있다. 직권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의 상관에 윤리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sup>86)</sup> 오스트리아에서도 대형 기관이나 국가 또는 민간기관에서 행동강령을 만들고 공개하는 유행이 일고 있다. 이러한 코드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행동강령은 반부패행위 프로그램에 속하며, 조직의 구성체계를 넓힌다.

---

85) Fellmann, Die automatische Korruption (2010), S. 111.

86) *Ibid.*, S. 113.



예를 들어, 연방총리사무처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에서는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은 물적 선물 또는 팁뿐만 아니라 상품권, 휴가여행, 행사나 식사 초대를 의미한다.<sup>87)</sup> 또한 여기에 현저하게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할인, 서비스제공, 취업알선 등도 부적절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액수가 명기된 선물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회계감사원의 행동강령 원칙으로는 신뢰성, 무결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익충돌, 직업상 비밀유지, 전문능력 및 직업상 계속교육이 있다.<sup>88)</sup> 이 중에서 이익충돌(Interessenkonflikte)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sup>89)</sup> 구성원들은 감사활동 이외에 외부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예를 들어 강연, 교육 등), 이익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수행책임 및 수행권한이 이러한 종류의 활동과 결코 결부되어 있지 않다고 보증한다. 구성원들은 그들의 독립성과 무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거절해야 한다. 구성원들은 직무활동 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보가 다른 이를 해치는 곳에 쓰여서도 안 된다. 구성원들은 사적 목적으로 직무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부패행위의 위험을 가져오거나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관계를 회피해야 한다.

린츠대학교(Johannes Kepler Universität Linz)의 부수적인 활동 및 행위지침(Richtlinie Nebenbeschäftigungen und Nebentätigkeiten)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외부강의 등 부수적인 활동과 관련해

87) Bundeskanzleramt Österreich, Verhaltenskodex zur Korruptionsprävention (2010), S. 8, [https://www.oeffentlicherdienst.gv.at/moderner\\_arbeitgeber/korruptionspraevention/infos/VerhaltenskodexDeutsch\\_2012\\_barrierefrei.pdf?3shqic](https://www.oeffentlicherdienst.gv.at/moderner_arbeitgeber/korruptionspraevention/infos/VerhaltenskodexDeutsch_2012_barrierefrei.pdf?3shqic) (최근 접속: 2015. 9. 22).

88) Der Rechnungshof, Verhaltenskodex S. 8 f, <http://www.rechnungshof.gv.at/uploads/media/Verhaltenskodex.pdf> (최근 접속: 2015. 9. 22).

89) *Ibid.*, S. 12 f.

730유로까지 인정되고 있고,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sup>90)</sup> 부수적인 활동과는 달리 부수적인 행위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91)</sup>

---

90) Johannes Kepler Universität Linz, Richtlinie Nebenbeschäftigungen und Nebentätigkeiten (2013), S. 2, [http://www3.jku.at/mtb/content/e39/e21225/e21231/e22255/mtb\\_Item22260/beilage22283/3206\\_Nebenbeschaeftigungen\\_Nebentaetigkeiten\\_V1\\_MTB35\\_280813.pdf](http://www3.jku.at/mtb/content/e39/e21225/e21231/e22255/mtb_Item22260/beilage22283/3206_Nebenbeschaeftigungen_Nebentaetigkeiten_V1_MTB35_280813.pdf) (최근 접속: 2015. 9. 22).

91) *Ibid.*, S. 6.

## 제 5 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오스트리아에서 부패행위방지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선 행정청인 경찰, 검찰, 독립된 재판권 행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특수기관들로는 중앙은행, 금융시장감독청, 경쟁청 등이 있다.

### 제 1 절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

연방내무부와 연방재무부에는 내부 범죄방지와 특수임무를 위한 특별기구인 내부사무국(Büro für interne Angelegenheiten: BIA)이 있었다. 이는 2010년 1월 1일까지 존치해 있다가 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연방관청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법에 의해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Bundesamt zur Korruptionsprävention und Korruptionsbekämpfung: BAK)이 설립되었다. 또한 보안경찰법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보안경찰법의 개혁은 본질적으로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 설립과 관련이 깊다.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은 공공안보이사회 제2과에서 분리되어 정착하였다. 연방청은 무엇보다도 연방차원에서 부패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활동한다. 연방공무원은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의 업무 범위에서 고려되는 형벌상 제재가 의심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직무상의 순서를 벗어나 연방청에 신고할 수 있다. 담당기구는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센터(Meldestelle Korruption und Amtsdelikte; Single Point of Contact: SPOC)이다.<sup>92)</sup> 연방청은 전체적으로 관련한 의심 신고들을 비밀리에 처리한다. 이러한 청원이나 진정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락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요청한다. 왜냐하면

92) Bundesamt zur Korruptionsprävention und Korruptionsbekämpfung, “Meldestelle Korruption und Amtsdelikte (SPOC)”, [http://www.bak.gv.at/cms/BAK\\_dt/meldestellen/start.aspx](http://www.bak.gv.at/cms/BAK_dt/meldestellen/start.aspx) (최근 접속: 2015. 9. 20).

종종 조사활동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익명의 신고 시 형사소송상 또는 보안경찰상 규정의 근거 아래에서 출처조사가 필수적일 수 있다. 또한 연방청은 경제범죄 및 부패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과 외국의 부패행위방지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인터폴, 유럽연합의 관할 기구 및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사기구와의 직무상 협조와 협력이 해당한다.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은 3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국에서는 자원·지원·법률을, 제2국에서는 예방·교육·국제협력을, 제3국에서는 전략적인 직무를 담당한다. 이 기관의 청장은 헌법재판소장, 행정법원장, 최고재판소장의 청문이 있는 후 5년의 임기로 연방내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재임명도 가능하다. 이 청장에게는 모든 유상의 부수적인 행위는 금지되나, 교육분야에서의 활동은 예외이다.

<그림 2>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의 조직도<sup>93)</sup>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은 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다음의 부패행위 등을 담당한다.

93) Bundesamt zur Korruptionsprävention und Korruptionsbekämpfung, "Organisation", [http://www.bak.gv.at/cms/BAK\\_dt/das\\_bak/organisation/start.aspx](http://www.bak.gv.at/cms/BAK_dt/das_bak/organisation/start.aspx) (최근 접속: 2015. 9. 20).

<표 7> 형사상 제재 대상인 부패행위

- 직권남용
- 부정처사 관련 뇌물공여
- 뇌물수뢰
- 뇌물공여
- 뇌물증뢰 또는 뇌물수뢰의 예비
- 금지된 개입
- 직위의 이용 또는 공직자의 관여 하에서 배임
- 직원을 통한 선물수취
- 공공계약발주절차에서 경쟁제한적인 타협과 중대한 사기
-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자를 통한 선물수취
- 돈세탁
- 형법 및 형법상 부수법률에 따른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 등

보안청(Sicherheitsbehörde)은 위에서 언급된 행위를 인식하자마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포괄적인 투명성 요구에 따라서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의 전체적인 훈령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공포되어야 한다. 어떤 훈령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여 구두로 부여된 경우, 이는 나중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추가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훈령의 부여가 지체에 대한 우려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훈령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정부의 활동과 관련해 사실관계 측면에서 특별한 권리보호를 배려하고자 연방내무부에는 권리보호담당자와 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권리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2명의 구성원은 연방정부의 제안으로 헌법재판소장, 행정법원장, 최고재판소장의 청문이 있는 후 5년의 임기로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재임명도 가능하다. 최종 12년 전까지 연방연부의 장 또는 대표자로 있던 자는 구성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권리보호위원회의 전체 구성원은 임무수행 시 독립적이고, 어떤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직무상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 제 2 절 경제범죄 및 부패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

경제범죄 및 부패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Zentrale Staatsanwaltschaft zur Verfolgung von Wirtschaftsstrafsachen und Korruption: WKStA)는 2011년 9월에 설립되었다. 또한 여기에서는 5백만 유로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한 금융범죄, 사회사기, 파산채무자의 행태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

형법 제304조에서 제309조까지의 이른바 부패행위 구성요건의 넓은 의미에서 3천 유로를 초과하는 이익과 관련한 행위와 같은 전체적으로 형사상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은 고등지방법원의 절차에서 중앙검찰청이 담당한다. 그러나 직권남용의 규정은 제외되고, 이러한 점에서 중앙검찰청은 오직 사전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다. 즉, 중앙검찰청은 사건 처리를 넘겨받을 수 있으나,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순한 직권남용의 사건은 지역 관할 검찰에서 처리하게 된다.

2013년 3월부터는 익명의 공익신고시스템이 인터넷상에서 구현되고 있다.<sup>94)</sup> 이 시스템은 우편함을 통해 익명성이 유지되고 있는 공익신고자와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편에 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응하는 익명의 신고의 취급과 달리 완전한 익명성의 동시적 보장에서 공익신고자에게 검사가 문의하는 것을 열어두고 있다.<sup>95)</sup>

검사는 적법성 원칙에 맞게 재판상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의심을 일으키는 모든 사정을 추적할 의무가 있다. 이때 검사가 보안청 측면에서 신고에 의하거나 기타 익명의 개인에 의한 제보, 내부자

94) <https://www.bkms-system.net/bkwebanon/report/clientInfo?cin=1at21&language=ger>  
(최근 접속: 2015. 8. 19).

95) Langenhahn in Passarge/Behringer, Handbuch Compliance international (2015), S. 392.

정보, 신문기사와 같은 것에 의해 알고 있는지는 상관없다. 이러한 무조건적 추적의무로부터 재판상 유죄로 되지 않을 절차를 정지시킬 의무도 도출된다.<sup>96)</sup>

검사가 직권남용으로 판단하게 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원칙적으로 용의자는 이러한 의심에 대해 심문을 받아야 한다. 어떤 우회적인 것은 직권남용의 불법행위가 재판상 명령에 따라 배심법원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는다.<sup>97)</sup> 검사 기소의 기관력에 따라 그 곳에 배심법원으로써 관할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이 확정된다.

### 제 3 절 회계감사원

오스트리아의 회계감사원은 국민의회(Nationalrat)의 독립기구로서 연방, 주정부, 1만 명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감사를 맡고 있다. 이는 재정관리의 통일성 원칙(Grundsatz der Einheitlichkeit der Finanzkontrolle)에 따른 것이다.<sup>98)</sup> 오스트리아의 9개 연방 각 주에도 주 헌법에서 주 회계감사원을 두고 있다. 공공재산 관리자로서의 국가가 최소한 50% 이상 관여하고 있는 사업, 재단, 공법상 기금, 법인들은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sup>99)</sup> 회계감사원은 자체적으로 감사대상, 감사기간, 감사수준을 정한다. 다만, 회계감사원은 항상 국민의회 또는 지방의회로부터 특별감사를 요청받을 수 있다. 회계감사원은 매년 회계 및 장부상 정당성과 경제성, 합법성, 합목적성에 관한 다수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회계

96) Aicher-Hadler, Verantwortlichkeit bei Amtsmissbrauch und Korruption (2013), S. 53, [http://gemeindeb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_1MB\).pdf](http://gemeindeb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_1MB).pdf) (최근 접속: 2015. 9. 22).

97) *Ibid.*, S. 58.

98) <http://www.rechnungshof.gv.at/ueber-den-rh/der-rechnungshof.html> (최근 접속: 2015. 5. 27).

99) [http://de.wikipedia.org/wiki/Rechnungshof\\_%28%C3%96sterreich%29](http://de.wikipedia.org/wiki/Rechnungshof_%28%C3%96sterreich%29) (최근 접속: 2015. 5. 27).

감사원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다. 특히, 연방회계결산과 소득 보고서는 회계감사원에 의해 작성된다.

회계감사원에서는 모든 관련 국가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한다면,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각자 특별한 인식의 공유는 부패행위에 대한 강하고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유되고 포괄적인 행동양식은 공적 수단이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각자의 독립성과 특별한 권력의 고려 하에서 네트워크 협력 및 규제 공백을 메우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의 공동의 바람이라고 한다.<sup>100)</sup>

여기에 발맞추어 회계감사원은 부패행위방지에 보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sup>101)</sup> 특히, 이는 전체적인 국가경제 운영의 감사와 자문이라는 그의 핵심적인 업무범위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때 불충분한 부분을 지시하고, 폐해를 밝히며, 잘못된 방향으로의 발전을 예방하고 투명성 확보를 달성하면서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초석을 다져나간다. 이러한 기초에서 감사기관이나 입법자들은 적절히 반응하며 권한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감사보고서를 국회 또는 관할 주 의회에 제출한 후 공개함으로써 예방적인 효과가 강화된다. 회계감사원의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해서도 국제최고감사기구(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TOSAI)에서 예방적인 부패행위방지에 대해 특별한 중점과제로 두고 있다.

회계감사원은 미디어협력과 미디어진흥에 관한 연방헌법<sup>102)</sup> 제1조 제3항에 따라 공포된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양식

---

100) <http://www.rechnungshof.gv.at/internationales/korruptionsbekaempfung.html> (최근 접속: 2015. 7. 24).

101) *Ibid.*

102) 정식 명칭은 Bundesverfassungsgesetz über die Transparenz von Medienkooperationen sowie von Werbeaufträgen und Förderungen an Medieninhaber eines periodischen Mediums: BVG Medienkooperation und Medienförderung (BGBl. I Nr. 125/2011)이다.



으로 회계감사원의 규제를 받는 법인들의 리스트를 오스트리아 통신청에 전달하여야 한다.<sup>103)</sup> 이러한 리스트는 반년마다 현실화되고 있다.<sup>104)</sup> 회계감사원이 오스트리아 통신청에 알려준 모든 법인은 임시적으로 공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sup>105)</sup>

미디어투명성법과 관련해 회계감사원은 그의 감사 시 광고연결과 미디어후원의 구체적인 고시를 감사하는 것을 중지하게 된다.<sup>106)</sup> 회계감사원 자체는 광고를 위한 재정적인 방법과 정기적인 전자미디어 및 정기적인 간행물에서 기타 유상의 공개를 이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후원금은 정기적인 미디어의 소유자에게 소모되지 않는다.

2012년 정당법 개정과 함께 보다 확실한 투명성을 위한 새로운 공개의무가 정당에 부여되면서, 회계감사원에 많은 추가적인 임무가 위임되었다.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정당의 답변서가 법률의 요건에 맞는 경우, 회계감사원이 정당의 답변서를 받고, 조정하고 공개해야 할 임무가 속한다.<sup>107)</sup> 회계감사원에 전달된 답변서는 사전에 2명의 공인 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다음 단계에서 회계감사원은 그의 관할에 있는 법인에게 개별적이 참여기업과 종결된 법률행위의 총액을 공고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어서 회계감사원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5만 유로를 초과하는 정당기부는 회계감사원에 지체 없이 신고되어야 하고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허용되지 않는 기부는 회계감사원에 전달

103) Rundfunk & Telekom Regulierungs-GmbH, Die Liste des Rechnungshofes, <https://www.rtr.at/de/m/ListeRechnungshof> (최근 접속: 2015. 8. 10); 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Fibel zum Korruptionsstrafrechtsänderungsgesetz 2012, S. 22, [https://www.justiz.gv.at/web2013/file/2c948485398b9b2a013c6764c78f2bfb.de.0/korrstraeg\\_fibel\\_webversion.pdf](https://www.justiz.gv.at/web2013/file/2c948485398b9b2a013c6764c78f2bfb.de.0/korrstraeg_fibel_webversion.pdf) (최근 접속: 2015. 8. 10).

104)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법인의 리스트는 <http://www.rechnungshof.gv.at/beratung/pruefobjekte.html> (최근 접속: 2015. 8. 10) 참조.

105) *Ibid.*

106) <http://www.rechnungshof.gv.at/sonderaufgaben/medientransparenzgesetz.html> (최근 접속: 2015. 8. 20).

107) <http://www.rechnungshof.gv.at/sonderaufgaben/parteiengesetz.html> (최근 접속: 2015. 8. 20).

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은 이것을 자선기관 또는 학술기관 등에 전달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은 그에게 위임된 임무범위 내에는 본래의 열람 및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회계감사원은 정당운영과 관련해 숫자상의 정확함과 더불어 단지 정당의 답변보고서가 체계적 분류와 구성부분에 있어 정당법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sup>108)</sup>

## 제 4 절 경 찰

오스트리아 경찰은 일반적인 집행공무원과 더불어 경제범죄와 사기 행위 등에 대한 특화된 단일체를 이루고 있다. 2002년에는 경찰과 헌병의 정비에 정점을 이루었던 집행권의 포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사법경찰의 업무는 새롭게 구성되었고,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과 지방범죄수사청(Landeskriminalämter)들이 설치되었다.

예를 들어, 연방범죄수사청은 2004년부터 연방내무부에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보고서를 공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는 국가적인 정보활용으로 정보교환을 위해 국제적인 정보채널인 인터폴(Interpol)과 에그몽 그룹(Egmont Group)과 협력하고 있다. 에그몽 그룹에서는 세계적으로 101곳의 신고소가 있는 각 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s: FIUs)의 국제적인 연합이 중요하다. 또한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하고 있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도 언급해야 한다. 자금세탁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스트리아에서 경찰은 보안행정기관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에서 경찰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 즉, 강제적인 위협과 적용 아래

---

108) *Ibid.*

에서 위협과 방해의 예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고권적 행정행위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기관보다는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에 의해 경찰의 개념은 좀 더 상세히 설명될 수 있다. 질서 위협과 질서방해가 행정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를 행정경찰이라고 한다. 보안경찰법(Sicherheitspolizeigesetz)에 의한 보안경찰은 공적인 평온, 질서, 안전의 유지와 보편적인 구조의무가 있다. 이처럼 보안경찰은 모든 질서위협과 질서방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제 6 장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

공법상 측면에서 공익신고라는 주제를 다루는 경우, 여기에 어떤 긴장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바로 공적인 비밀유지의무와 공공성의 회복 사이에 있는 긴장과 모순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새롭거나 격양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며,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밀유지와 공개 사이에 경중은 헌법상 가치판단에 따라 어떻게 가르는지, 공법상 법규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주의를 끈다. 비밀유지의무는 헌법 부문에서든 개별법에 의해서든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함축성 있게 완성되어있다. 반면에 공공성의 회복은 상당히 막연한 것으로 특징을 지을 수 있다.

### 제 1 절 개 관

오스트리아에서는 최근에서야 공익신고자 보호의 몇 가지 유형을 도입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적인 영향, 만연된 금융비리, 정치적 부패행위 사례 등이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공익신고자 관련법에 대한 움직임은 미온적이다. 오스트리아의 공직자에게도 오랫동안 적절한 기관에 비리 등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고나 다른 유형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 1월 차별조항에 대한 보호가 연방공무원법에 추가되면서 개선되기는 했다. 이는 공익신고와 관련한 첫 번째 법적 조치였다. 어떤 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은 그들의 상관 또는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보호를 요청한 공익신고자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공익신고자에게 양갈음을 하는 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노동법상 공익신고자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기본적인 사회원칙을 어긴 해고로부터 보호되고, 환경정보법(Umweltinformationsgesetz: UIG)상으로도 부패행위를 알리는 자는 보호된다.<sup>109)</sup>

다음의 표는 2013년도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공익신고와 관련한 유럽 주요 나라들의 법, 정책, 사회적인 측면을 평가한 결과이다.

<표 8>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범위: 유럽 국가들의 평가<sup>110)</sup>

상 급	중 급	하 급
현행법상 공·사적 영역에서 공익신고자를 위한 포괄적이거나 거의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가 있음	현행법상 공·사적 영역에서 공익신고자를 위한 부분적인 규정과 절차가 있음	현행법상 공·사적 영역에서 공익신고자를 위한 규정과 절차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불가리아 핀란드 그리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109) Transparency International, Whistleblowing in Europe: Legal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in the EU (2013), at 24, [www.transparency.de/fileadmin/pdfs/Themen/Hinweisgebersysteme/EU\\_Whistleblower\\_Report\\_final\\_web.pdf](http://www.transparency.de/fileadmin/pdfs/Themen/Hinweisgebersysteme/EU_Whistleblower_Report_final_web.pdf) (최근 접속: 2015. 8. 16).

110) 오스트리아에서 공익신고자의 보호 수준은 유럽 국가들 중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중간 정도(partial protection)로 평가받았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op. cit.*, at 8.

## 제 2 절 직무상 비밀과 정보보호

위탁된 비밀의 보장의무는 오스트리아 헌법상 분명히 뚜렷하다. 국가의 비밀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선 헌법상 근거를 가진 직무상 비밀이 원인이다(연방 헌법 제20조 제3항). 영업상 비밀 또는 사적 비밀이 중요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은 확대된 개인정보보호에 있다. 헌법은 직무상 비밀에 헌법상 정보제공의무를 측면에 놓았다(연방 헌법 제20조 제4항). 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는 약하게 형성되었으며,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와 직무상 비밀이라는 한계에 있다. 직무상 비밀은 직무상비밀유지의무가 미치는 어떤 비밀인 사실이다. 이는 행위자에게 오직 그의 직무상 활동을 통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즉, 행위자가 직무상의 비밀을 업무활동에 근거해서 알거나, 업무상 필요 없이 그의 지위에 근거해서 어쨌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11)</sup> 업무상 내부적인 것들을 마구 내뱉는 것은 이러한 개념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상 적시 되고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에 속한다.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에 대한 행정 실무상 단지 예외적으로 과도한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편한 내부적인 일들의 공개가 공익신고자에 의해 많은 적든 간에 막무가내로 직무상 비밀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해 불편한 것들은 이러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제공된 행정청의 비밀유지의무의 제한적인 해석은 국가적인 비밀범위의 팽창을 저지할 것이다. 수많은 공무원을 겨냥한 사면을 언론에 떠맡긴다면, 결과적으로 이미 직무상 비밀유지를 위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의 침해가 되는 것은

111) Aicher-Hadler, Verantwortlichkeit bei Amtsmissbrauch und Korruption (2013), S. 23, [http://gemeindeb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1MB\).pdf](http://gemeindeb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1MB).pdf) (최근 접속: 2015. 9. 22).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 또는 어느 비교 가능한 경우에 법적 의미의 비밀이 존재하는지는 공적인 비밀유지의 이익이 침해되었는지의 상황과 같은 의문이 있다.

직무상 비밀은 사실상 공공부문에서 직무상 비밀을 지니고 있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상당한 장애물을 통상적으로 위법하게 다루게 된다.<sup>112)</sup> 더욱이 공익신고자가 위법하고 부도덕하며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에 대한 정보, 권력남용에 대한 정보, 공공이익의 위협에 대한 정보를 폭로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은 위법하게 다루게 된다.<sup>113)</sup> 예를 들어, 방송매체와의 관련해서 직무상 비밀유지는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 특정한 자 또는 대중의 권한 있는 정보이익과 다른 한편으로 관련자의 비밀유지이익 사이에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또한 한편으로 행정청은 정보제공을 위해 원칙적으로 헌법상 의무에 근거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계속해서 비밀유지를 위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sup>114)</sup> 2011년 개정된 공무원직무법 제53조a도 이러한 실상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sup>115)</sup>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에 대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공무원은 선의로 한 특정한 부패행위를 직무관청 또는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에 신고한다.<sup>116)</sup> 따라서 직무상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공공성에 마음을 둔 공익신고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없다. 특히, 형법상 배임은 재산 이외의 다른

---

112) Berka, Whistleblowing und Öffentliches Recht, in: Gruber/Raschauer *et al.*, Whistleblowing (2015), S. 39.

113) *Ibid.*

114) Aicher-Hadler, *op. cit.*, S. 24.

115) 오스트리아에 의해 비준된 부패행위에 관한 민사법협약 유럽반부패그룹의 권고를 이 규정에 의해 반영해야 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Whistleblowing in Europe: Legal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in the EU (2013), at 24, [www.transparency.de/fileadmin/pdfs/Themen/Hinweisgebersysteme/EU\\_Whistleblower\\_Report\\_final\\_web.pdf](http://www.transparency.de/fileadmin/pdfs/Themen/Hinweisgebersysteme/EU_Whistleblower_Report_final_web.pdf) (최근 접속: 2015. 8. 16).

116) Berka, *op. cit.*

권리의 침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행위에 의해 형법 제310조에 의한 직무상 비밀침해를 범행할 수 있다.

헌법과 비밀유지의무를 상세히 구체화한 공무원직무법은 불확실한 사건의 가차 없는 폭로에 의한 이익에 관해 충성할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기구 내에서 공무원의 충성의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유럽법원의 판례에 의하면<sup>117)</sup> 유럽연합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폭로하기 때문에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권과 개별적인 법률상 정보보호의 규정들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정도로 기관의 이익은 불편한 사실의 공개에 대해 폭넓은 보호를 향유한다. 개인정보 개념의 범위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권이 법인과 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는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법(Datenschutzgesetz) 제1조에 따른 기본권은 여기에서 부여된 비밀보호를 보호가치 있는 비밀유지이익에 한정하고 있다. 부패행위의 경우로부터 사실은폐에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있을 수 없고, 정보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는 최소한 이익형량을 통해 상대적인 것으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정보보호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처분가능성의 경우를 도외시하고 기본권의 의미에서 보호가치 있고, 보호필요성에 특별한 심사는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지배적인 해석에 의하면, 비밀의 내무적인 일을 외부로 퍼뜨리는 모든 공익신고자는 필연적으로 공무원직무법상 또는 정보보호법상 비밀유지 또는 충성의무의 침해로 유도된다.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모든 요건은 법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sup>118)</sup> 그러면서 헌법에 근거한 직무상 비밀과 정보보호에

117) EuG, Urteil vom 13. 12. 2012, T-199/11 P; EuGH, Urteil vom 6. 3. 2001, Rs. C-274/99 P.

118) Berka, *op. cit.*, S. 40.



관한 기본권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노력에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가치판단의 여지는 완전히 차단되지 못한다. 헌법은 단지 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폭로에 대해 보호해주고, 의사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가치 있는 것으로서 공공성 회복을 겨냥하고 있다.

### **제 3 절 위법한 비밀누설: 무분별한 정보제공**

비밀취급자에 의한 법률상 계약상 부여된 비밀유지의무의 침해는 많은 경우에 위법하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고려가 보여주어야 한다. 비밀누설이 사회 또는 제3자의 이익의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이익에 의해 강행된 경우, 단지 예외적으로 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통상적으로 행정청에서 비밀정보의 누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법적 평가에서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비밀누설의 우선특권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형식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제공자와 대규모 교섭을 위한 징후가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제 4 절 언론 측면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비밀의 공개**

매스미디어에 비밀정보들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언론에 의해 공개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슬쩍 건넨 정보는 실무상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자가 정보제공자를 부추기고 위법한 정보누설에 일부 관여한 경우, 법적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언론은 거의 항상 자신의 관여 없이 정보를 취득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위법한 관여는 특히, 취재원 비밀의 보호 때문에 통상적으로 거의 증명

되지 못한다.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자유로운 헌법국가에서는 취재원 비밀의 공개적인 평가가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원칙과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에 근거한 정보의 활용을 최소한 포함하고 있다는 원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오스트리아 법원의 판례를 발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취재원 비밀의 보호는 오스트리아 법상 완전히 포괄적인 종류와 방법에 근거한다(미디어법 제31조).

## 제 7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부패행위의 핵심은 도덕적인 표준, 공직의무, 법률과 같은 다양한 행태규범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권력이 있는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에 있다. 부패행위는 종종 회색지대에서도 일어난다. 이때 어떤 급부나 대가에 의한 영향력과 관련되며, 이에 대한 형벌 가능성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최근에 발표한 부패인식(청렴성)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의 상황은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오스트리아는 부패행위방지과 관련한 개선되고 투명한 법제를 이루고자 투명성기획이 결정되었다. 이에 부패행위형법개정 법률이 2013년 1월부터, 로비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형벌가능성이 있는 행태의 결과와 관련해 단체책임법이 강행적으로 고려된다. 부패행위방지를 위해서는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이 관할하고 있고, 경제범죄 및 부패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 검찰청이 있다. 그밖에 법적으로 규정된 부패행위의 예방조치 및 준법 감시규정 등이 있다.

### 제 2 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 I. 시사점

##### 1. 개방성과 투명성 확대로 부패행위 예방

부패행위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예방적·억제적 방법이 조화를 이룬 포괄적인 반부패행위의 체계는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지방분권화 정책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공공 행정의 구조는 더 복잡해져 갈 것이다. 공공영역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법제는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당혹감을 느끼지 않고 공공행정의 서류와 문서 등에서 특정한 행정판단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경우에 따라서 부패행위를 적발해 낼 수 있다. 더욱이 부패행위를 들어내는 것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 2. 부정청탁 관련 로비활동에 대한 규제

로비활동은 오스트리아에서도 ‘폐쇄된 문 뒤로 영향력 행사’라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협회, 기업, 이익단체, 정치, 의회, 행정 등 사이에 지속적인 정보교환이 민주적인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우려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로비법이 시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로비활동 등록부의 설치와 공직자와 정치가의 로비스트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로비활동에 대한 법률상 기본조건과 관련이 있는지, 무엇이 로비활동이 일어나는 환경과 관련하는지 등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로비스트 스스로도 현재 시스템의 투명성 결여를 비판하고, 시급히 필수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투명성과 관련해 로비법은 반부패행위와 정당의 자금조달 부분에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보자유, 관할 감독청에서와 같이 많은 인접영역에서는 여전히 투명성 결여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로비활동 등록부에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로비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로비활동 등록부는 충분한 투명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회보험기업,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 등 로비활동을 하는 많은 그룹은 전체적으로 로비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특히,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형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로비현장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모든 로비활동 분야와 로비스트들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비활동 등록부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법률상 제재가 실행되지 못한 점은 결정적인 예외사항과 함께 규제체계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로비활동 등록부는 로비스트 측면에서 투명성의 경향이라고 보겠지만, 로비활동한 것에 대한 공개의무는 없다. 공직자에 대한 여러 행동규약에서도 로비스트와의 교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로비법은 공직자와 정치가에게 로비활동의 중개 또는 로비스트로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가 있으나 사기업에서의 부수적인 행위는 허용되고 있어, 법적 흠결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오스트리아에는 공직자와 정치가가 그들의 활동영역을 사경제 분야로 옮김에 있어 의무적인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II. 개선방안

### 1. 확실한 법집행과 계층별 맞춤형 법제 마련

부패행위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법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패행위를 한 자가 실제로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관용원칙, 문책가능성, 실효성 있는 확실한 법집행 등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상위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위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특히, 부패행위 없는 청렴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공직자 계층별 맞춤형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119)</sup>

119) 박지연, ‘반부패 포럼’ 기초연설 존스킨 OECD 사무총장: “부패적결, 확실한 법집행 중요”, 법률신문 2014. 12. 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9318> (최근 접속일: 2015. 3. 12) 참조.

내부의 부패행위를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명예훼손이나 비밀유지의무의 적용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규정하여 보다 더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고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2. 법제적 정합성 완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와 그의 제재규정 등 위 두 법 사이의 중첩 또는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sup>120)</sup> 그밖에 구성요건의 확장, 법률효과, 규정배제 문제 등 형법과 같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도 요구된다.<sup>121)</sup>

## 3. 사회적 투명성 개선을 위한 여론 형성

부패행위를 사전에 올바르게 다루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습, 강연, 업무회의 윤리규정, 근무명령, 유명 경영인과 정치인의 모범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높은 이해심과 감수성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대중정보매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와 부패행위에 감정적으로 격분하거나 유명인사를 조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충분하지 않으며, 부과금이나 그들의 이득을 높이고 세력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20) 이유봉,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2013), 147면 이하 참조.

121)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2012), 241면 이하 참조.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잡지

- 이유봉: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3.
- \_\_\_\_\_ :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Achathaler, Lukas / Hofmann, Domenica / Pazmandy, Matthias *et al.*:  
Korruptionsbekämpfung als globale Herausforderung: Beiträge  
aus Praxis und Wissenschaft, VS/Springer, 2011.
- Aigner, Elisabeth: Whistleblowing in Österreich, Magisterarbeit, Universität  
Wien, 2011.
- Dölling, Dieter: Handbuch der Korruptionsprävention: Für Wirtschafts-  
unternehmen und öffentliche Verwaltung, C. H. Beck, 2007.
- Fellmann, Ilan: Die “automatische” Korruption: Handbuch zur  
Korruptionsprävention mit Falldarstellungen, Codes of Conduct  
und Checklisten, BWV, 2010.
- Gruber, Michael/Raschauer, Nicolas *et al.*: Whistleblowing: Arbeitsrecht  
- Öffentliches Recht - Wettbewerbsrecht - Kapitalmarktrecht -  
Strafrecht, MANZ, 2015.
- Kucsko-Stadlmayer, Gabriele: Das Disziplinarrecht der Beamten, 4. Auflage,  
Springer, 2010.
- Milaqi, Bledar: EU-Lobbying zwischen Interessenvertretung und Korruption,  
Diplomica, 2014.

## 참 고 문 헌

- Mischkowitz, Robert / Bruhn, Heike / Desch, Roland / Hübner, Gerd-Ekkehard / Beese, Dieter: Einschätzungen zur Korruption in Polizei, Justiz und Zoll, BKA, 2000.
- Passarge, Malte/Behringer, Stefan: Handbuch Compliance international: Recht und Praxis der Korruptionsprävention, ESV, 2015.
- Weichselbaum, Barbara: Disziplinarrecht der Beamten und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Zeitschrift für öffentliches Recht (ZÖR) 62 (2007), 537 ff.
- Weratschnig, Bernhard: Korruption im öffentlichen Bereich: Ein Überblick über die geltende Rechtslage in Österreich, Zeitschrift Risk, Fraud & Compliance (ZRFC) 2013, 224 *et seqq.*

## 인터넷 자원

- 박지연, ‘반부패 포럼’ 기조연설 존스킨 OECD 사무총장: “부패척결, 확실한 법집행 중요”, 법률신문 2014. 12. 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9318> (최근 접속일: 2015. 3. 12).
- Aicher-Hadler, Gabriele: Verantwortlichkeit bei Amtsmissbrauch und Korruption, 3. Auflage, 2013,  
[http://gemeindeg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_1MB\).pdf](http://gemeindegund.at/images/uploads/downloads/2014/Publikationen/RFGs/2013/RFG_1-2013_-Verantwortlichkeit_bei_Amtsmissbrauch_und_Korruption_(PDF__1MB).pdf) (최근 접속: 2015. 9. 22).
- Bundesamt zur Korruptionsprävention und Korruptionsbekämpfung, “Meldestelle Korruption und Amtsdelikte (SPOC)”,  
[http://www.bak.gv.at/cms/BAK\\_dt/spoc/start.aspx](http://www.bak.gv.at/cms/BAK_dt/spoc/start.aspx) (최근 접속: 2015. 10. 6).



\_\_\_\_\_, “Organisation”, [http://www.bak.gv.at/cms/BAK\\_dt/das\\_bak/organisation/start.aspx](http://www.bak.gv.at/cms/BAK_dt/das_bak/organisation/start.aspx) (최근 접속: 2015. 9. 20).

Bundeskanzleramt Österreich, Verhaltenskodex zur Korruptionsprävention, 2010, [https://www.oeffentlicherdienst.gv.at/moderner\\_arbeitgeber/korruptionspraevention/infos/VerhaltenskodexDeutsch\\_2012\\_barrierefrei.pdf?3shqic](https://www.oeffentlicherdienst.gv.at/moderner_arbeitgeber/korruptionspraevention/infos/VerhaltenskodexDeutsch_2012_barrierefrei.pdf?3shqic) (최근 접속: 2015. 9. 22).

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Fibel zum Korruptionsstrafrechtsänderungsgesetz 2012, [https://www.justiz.gv.at/web2013/file/2c948485398b9b2a013c6764c78f2bfb.de.0/korrstraeg\\_fibel\\_webversion.pdf](https://www.justiz.gv.at/web2013/file/2c948485398b9b2a013c6764c78f2bfb.de.0/korrstraeg_fibel_webversion.pdf) (최근 접속: 2015. 8. 10).

Council of Europe, Compliance Report on Austria: Incriminations (ETS 173 and 191, GPC 2), GRECO RC-III (2013) 26E, 2015,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RC3\(2013\)26\\_Austria\\_EN.pdf](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RC3(2013)26_Austria_EN.pdf) (최근 접속: 2015. 7. 27).

\_\_\_\_\_, Report on the Role of Extra-Institutional Actors in the Democratic System (Lobbying) Adopted by the Venice Commission at its 94th Plenary Session, 8-9 March 2013, [http://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AD\(2013\)011-e](http://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AD(2013)011-e) (최근 접속: 2015. 10. 6).

\_\_\_\_\_, Evaluation Report on Austria: Incriminations (ETS 173 and 191, GPC 2), GRECO, 2011,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Eval3\(2011\)3\\_Austria\\_One\\_EN.pdf](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Eval3(2011)3_Austria_One_EN.pdf) (최근 접속: 2015. 5. 25).

\_\_\_\_\_, Joint First and Second Evaluation Round, Evaluation Report on Austria, GRECO, 2008,

참 고 문 헌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2/GrecoEval1-2\\_\(2007\)2\\_Austria\\_EN.pdf](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2/GrecoEval1-2_(2007)2_Austria_EN.pdf) (최근 접속: 2015. 5. 25).

Der Rechnungshof, Verhaltenskodex,

<http://www.rechnungshof.gv.at/uploads/media/Verhaltenskodex.pdf>  
(최근 접속: 2015. 9. 22).

\_\_\_\_\_, <http://www.rechnungshof.gv.at/sonderaufgaben/parteiengesetz.html>  
(최근 접속: 2015. 8. 20).

\_\_\_\_\_, <http://www.rechnungshof.gv.at/beratung/pruefobjekte.html> (최근  
접속: 2015. 8. 10).

\_\_\_\_\_, <http://www.rechnungshof.gv.at/internationales/korruptionsbekaempfung.html> (최근 접속: 2015. 7. 24).

\_\_\_\_\_, <http://www.rechnungshof.gv.at/ueber-den-rh/der-rechnungshof.html>  
(최근 접속: 2015. 5. 27).

\_\_\_\_\_, <http://www.rechnungshof.gv.at/sonderaufgaben/medientransparenzgesetz.html> (최근 접속: 2015. 8. 20).

Fuchs, Walter/Kreissl, Reinhard/Pilgram, Arno/Stangl, Wolfgang:

Generalpräventive Wirksamkeit, Praxis und Anwendungsprobleme des  
Verbandsverantwortlichkeitsgesetzes (VbVG): Eine Evaluierungsstudie  
(2011), [http://www.irks.at/assets/irks/Publikationen/Forschungsbericht/irks\\_vbvg\\_bericht.pdf](http://www.irks.at/assets/irks/Publikationen/Forschungsbericht/irks_vbvg_bericht.pdf) (최근 접속: 2015. 9. 22).

Johannes Kepler Universität Linz, Richtlinie Nebenbeschäftigungen und  
Nebentätigkeiten (2013), S. 2,

[http://www3.jku.at/mtb/content/e39/e21225/e21231/e22255/mtb\\_Item22260/beilage22283/3206\\_Nebenbeschaeftigungen\\_Nebentaetigkeiten\\_V1\\_MTB35\\_280813.pdf](http://www3.jku.at/mtb/content/e39/e21225/e21231/e22255/mtb_Item22260/beilage22283/3206_Nebenbeschaeftigungen_Nebentaetigkeiten_V1_MTB35_280813.pdf) (최근 접속: 2015. 9. 22).

- OECD,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http://www.oecd.org/gov/ethics/oecdprinciplesfortransparencyandintegrityinlobbying.htm> (최근 접속: 2015. 9. 19).
- PERC, “Asian Intelligence: An Independent Fortnightly Report on Asian Business and Politics”, No. 895, March 19. 2014,  
<http://www.asiarisk.com/subscribe/exsum1.pdf> (최근 접속일: 2015. 3. 12).
- Rundfunk & Telekom Regulierungs-GmbH, Die Liste des Rechnungshofes,  
<https://www.rtr.at/de/m/ListeRechnungshof> (최근 접속: 2015. 8. 10).
- Transparency International, Lobbying in Europe: Hidden, Influence, Privileged Access,  
[http://www.transparency.org/files/content/feature/2015\\_LobbyingEurope\\_Methodology\\_EN.pdf](http://www.transparency.org/files/content/feature/2015_LobbyingEurope_Methodology_EN.pdf) (최근 접속: 2015. 9. 19).
- \_\_\_\_\_, Whistleblowing in Europe: Legal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in the EU (2013),  
[www.transparency.de/fileadmin/pdfs/Themen/Hinweisgebersysteme/EU\\_Whistleblower\\_Report\\_final\\_web.pdf](http://www.transparency.de/fileadmin/pdfs/Themen/Hinweisgebersysteme/EU_Whistleblower_Report_final_web.pdf) (최근 접속: 2015. 8. 16).
- \_\_\_\_\_, [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obbying\\_in\\_europe](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obbying_in_europe)  
(최근 접속: 2015. 9. 19).
- \_\_\_\_\_,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AUT> (최근 접속: 2015. 5. 25).
- \_\_\_\_\_, <http://www.ti-austria.at/korruption/was-ist-korruption.html>  
(최근 접속: 2015. 5. 19).
- Wikipedia, “Korruption”, <http://de.wikipedia.org/wiki/Korruption>  
(최근 접속: 2015. 5. 19).

참 고 문 헌

\_\_\_\_\_, “Rechnungshof (Österreich)”,  
[http://de.wikipedia.org/wiki/Rechnungshof\\_%28%C3%96sterreich%29](http://de.wikipedia.org/wiki/Rechnungshof_%28%C3%96sterreich%29)  
(최근 접속: 2015. 5. 27).

\_\_\_\_\_, “Amtsträger”, <http://de.wikipedia.org/wiki/Amtstr%C3%A4ger>  
(최근 접속: 2015. 5. 25).

Wirtschafts-und Korruptionsstaatsanwaltschaft, anonymes Hinweisgebersystem,  
<https://www.bkms-system.net/bkwebanon/report/clientInfo?cin=1at21&language=ger> (최근 접속: 2015. 8. 19).

# 부 록

##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법체계 (행정법, 강령 형법, 강령 등)	- 행정법 - 형법 - 강령	- 연방형법 - 개별 부패 방지법 - 공무원 윤리강령	- 행정법 - 형법 - 행동강령	- 행동강령 - 형법 - 행정법	- (형식적) 부패방지법 - 행정규칙, 가이드라인, 지침 등	- 행정법 - 형법	- 부패방지법 - 형법 - 강령(장관, 공무원)	- 행정법 - 형법 - 훈령 등 규칙
주요 법령	- 이해충돌법 - 공직신고자 보호법 - 로비법 - 공공부문 강령	- 연방형법 (뇌물죄, 이해충돌 방지규정) - 정부윤리법 - 공무원복무 개혁법 - 해외부패 방지법	- 연방공무원 법 - 형법 - 단체책임법 - 로비법 - 정당법 - 미디어투명 성법	- 장관행동 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행동 관리지침 - 뇌물법 - 사기법 - 공익정보 공개법	- 연방법 - 주법 - 행정규칙	- 부패방지법 - 공직생활 투명성법	- 부패방지법	- 국가공무원 법 - 국가공직자 윤리법 - 국가공직자 윤리규정

	캐나다	미 국	오스트리아	영 국	독 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 본
공직자	- 연방의원 - 공무원 (일반공무원, 보고대상 공무원) - 공직자	- 공무원 및 고용인 - 하원의원 - 공무원으로 선출, 지명되거나 천거된 사실이 통보된 자	- 공직자 (형법) - 공무원 (연방공무원법)	- 정무직 공직자 - 직업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 공직 담당자 - 공직 고용자 - 교육생	- 공직자 (국내, 국외, 법관)	- 공무원 - 공무원,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및 공공단체, 법인 등 포함	-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법)
공직자 외 범위	- 배우자 - 가족(친척)	- 배우자 - 자녀 - 가족	- 배우자 - 가족(친척) - 이해관계자 - 제3자	- 배우자 - 직계가족 (주식 기타 증권보유 신고/뇌물죄 적용) - 직원대리인 등과 소속기업	- 이해관계인 - 제3자	- 제3자	- 일반인 포함 (누구든지)	- 없음

	캐나다	미 국	오스트리아	영 국	독 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 본
금지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충돌</li> <li>- 투표</li> <li>- 내부정보 이용</li> <li>- 영향력행사</li> <li>- 외부채용</li> <li>- 금품등</li> <li>- 협찬여행</li> <li>- 민간계약</li> <li>- 정치활동</li> <li>- 모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충돌</li> <li>- 불법사례</li> <li>- 의사결정</li> <li>- 우선적 처리</li> <li>- 공무외 소독</li> <li>- 내부정보 이용</li> <li>- 영향력행사</li> <li>- 외부채용</li> <li>- 금품등혜택</li> <li>- 여행</li> <li>- 민간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따돌림 금지</li> <li>- 편파행위</li> <li>- 부수적인 업무의 제한</li> <li>- 선물 수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li> <li>- 이익충돌</li> <li>- 주식, 증권 투자</li> <li>- 직무전념 의무 위배</li> <li>- 내부정보 이용</li> <li>- 정치활동</li> <li>- 공무상비밀 누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가관계</li> <li>- 영향력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 수행 및 포기에 대한 제의, 약속, 증여</li> <li>- 선물 등</li> <li>- 영향력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물 및 항응 제공금지</li> <li>- 기관(법인 포함)간의 부정거래</li> <li>- 의원 및 공공 단체 뇌물</li> <li>- 조사 및 수색 방해</li> <li>- 부패 행위</li> <li>- 조사국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li> <li>- 허위 및 사실 호도정보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 및 물품 수수</li> <li>- 금전소비 대차, 부동산의 증여</li> <li>- 무상 물품 대여</li> <li>- 부동산 대출, 무상 서비스 제공</li> <li>- 미공개 주식 양수</li> <li>- 공응접대</li> <li>- 이해관계자 동반 유기 또는 골프</li> <li>- 이해관계자 동반 여행</li> <li>-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접대 재산상의 이익</li> </ul>



	캐나다	미 국	오스트리아	영 국	독 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 본
금품 등 (유형/가액)	-원칙적 금지 -선물 기타 이익 -200달러	-주별 차이	-소액의 사소한 선물 -100유로	-원칙적 금지 -장관 : 140 파운드 이하 -하원 : 650 파운드 -상원 : 500 파운드	-원칙적 금지 -연방 : 25 유로	-원칙적 금지	-원칙적 금지	-원칙적 금지
외부장외, 강연	-특별규정X	-원칙적 금지 -제공된 공무원 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경우 적용	-부수적인 행위로 가능 (신고 및 허가 사항) -선출직 공직자의 부수적인 수입 공개	-공무원 행동 관리 지침	-직위, 관행, 평균임금 고려	-교육기관에서의 강연 (허가 없이 가능) -기타의 경우 소속기관의 허가요함	-직무관련성 금지(선물 및 시혜주금지) -소속기관장의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뢰에 의한 강연 및 방송 출연 등에 대하여 윤리 감독관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가능

	캐나다	미 국	오스트리아	영 국	독 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 본
퇴직 후 취업 (대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채 전직 공무원(1년)</li> <li>- 전직 보고 대상 공무원 (2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한 모든 공무원</li> <li>- 직점 또는 상당히 관여했던 사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후 6개월 유예</li> <li>- 직위 또는 직무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범인에 활동 금지</li> <li>- 60세 미만 휴직공직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행동 관리 지침</li> <li>- 공무원영리 활동 및</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력</li> <li>- 대가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후 취업가능</li> <li>- 경우에 따라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규정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법</li> </ul>
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비법: 로비 스톱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비공개법: 로비스트 등록, 로비 활동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비법: 로비 스톱 등록. 미이행 시 행정위반에 따른 벌금. 로비스트 보수에 대한 형사상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익충돌 금지 규정</li> <li>- 공무원행동 관리 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규정X</li> <li>- 주의회 규칙으로 로비 스톱 등록 2개주 시행</li> <li>- Brandenburg와 Rheinland-Pfalz</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규정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규정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규정X</li> </ul>

	캐나다	미 국	오스트리아	영 국	독 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 본
신고자 보호 (대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 신고 보호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고발자 보호법:내부 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보고, 내부고발자 보복금지 및 징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상에서 익명의 공익신고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정보 공개법 (1998)</li> <li>- 근로자 - 노동재판소의 재판을 통한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자 보호센터 (합부르크)</li> <li>- 공익신고 보호관 (베를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생활 투명성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체의 소송 절차에서 증인, 참고인 등으로 허가 되지 않음</li> <li>- 일체의 소송 절차 진술 의무 없음</li> <li>- 법원은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통보자 보호법</li> <li>- 신고대상: 개인의 생명·신체보호·환경보전·소비자이익의 옹호</li> <li>- 신고방식: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하는 불가능</li> </ul>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벌:징역</li> <li>- 벌금, 몰수</li> <li>- 내부징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벌:징역, 벌금, 몰수</li> <li>- 민사처벌: 부당이득 반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벌</li> <li>- 징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벌:징역, 벌금, 몰수</li> <li>- 내부징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벌</li> <li>- 행정벌</li> <li>- 내부징계</li> <li>- 연금정지 (퇴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벌</li> <li>- 부과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적 제재</li> <li>- 행정적 제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벌</li> <li>- 내부징계</li> </ul>

	캐나다	미 국	오스트리아	영 국	독 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 본
주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li> <li>- 로비위원회</li> <li>- 재무위원회</li> <li>- 왕립기마 경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BI</li> <li>- 정부윤리청</li> <li>- 법무부 감찰국</li> <li>- 특별심사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li> <li>- 경제범죄 및 부패 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li> <li>- 연방부패 행위 예방 및 방지청</li> <li>- 회계감사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인</li> <li>- 왕립검찰청</li> <li>- 중대부정 수사청</li> <li>- 국가회계 감사원</li> <li>- 감사위원회</li> <li>- 공공회계 감사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 내무부, 연방범죄청</li> <li>- 주 각 주의 상황에 맞는 조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부패 방지처</li> <li>- 공직자윤리 위원회</li> <li>- 투명성고등 사무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 행위 조사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직자 윤리심사회</li> <li>- 윤리감독관</li> </ul>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li> <li>- 수사</li> <li>- 기소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li> <li>- 수사</li> <li>- 기소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li> <li>- 수사 또는 기소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영장 정보 제공 요구권</li> <li>- 비밀유지 의무 면제</li> <li>- 진술거부권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li> <li>- 검·경·회계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수사, 기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수집 및 제공</li> <li>-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li> <li>- 수사</li> <li>- 체포권</li> <li>- 기소권한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권</li> <li>- 징계권</li> </ul>